

고령화 사회와 대전시 도시계획

The Study on the Urban Planning of Daejeon
Metropolitan Area in Aging Society

임 병 호

연구진

연구책임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윤진성 / 도시기반연구실 위촉연구원

<요약>

제1장 서론

대전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는 이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계획과 정책 추진이 진행되거나 또는 향후 예상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응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정책은 주로 복지 측면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만 고민·대응하여 해결된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변화 및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특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대전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향후 대전시 차원에서 다양한 법정 및 비법정 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고령화와 관련한 대전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1.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高齡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또한 유사한 의미로서 노인(老人)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범위(연령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법규)에 기초하여 고령자를 규정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노인 등을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내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고령자 및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2차적 연구대상인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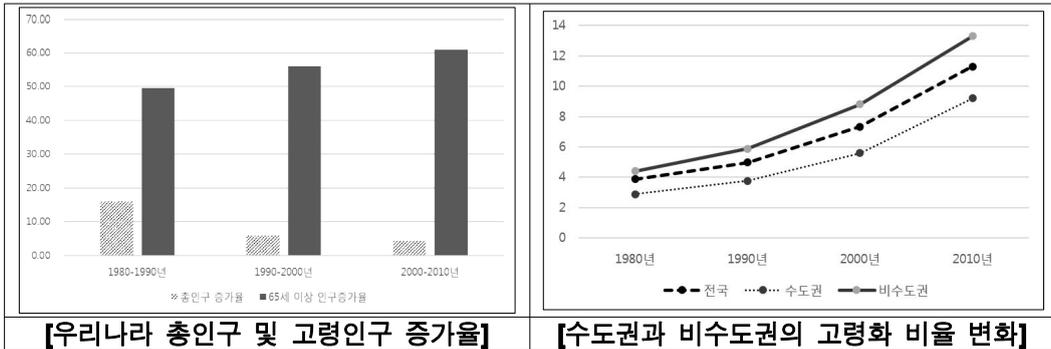
2.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크기의 변화 외에도 신체기관 및 운동기관의 쇠퇴, 감각기관의 쇠퇴, 내장기능의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노인은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획득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이전의 생활양식을 고집하게 되며, 그 때문에 새로운 생활양식, 설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만감, 위화감 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위와 역할의 변화이다. 주로 퇴직 등으로 인해 직업인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

1.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87%에서 1990년 4.98%, 2000년 7.33% 그리고 2010년 11.30%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2010년 기준 전라남도의 고령자 비율이 20.41%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다음 순위인 16.72%이다. 반면 울산시의 고령자 비율은 7.01%로 가장 낮다. 권역적으로 보면, 비수도권에서의 고령화가 수도권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 관련제도 고찰

고령자 관련 법규로는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거약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의 생활향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다.

고령자 관련한 국가차원의 계획으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다.

관련법규	목적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의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노인복지시설 제시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함	- 주거지원계획 수립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대상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등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조치 등

3. 선행연구 및 국제사회의 대응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연구로는 서울시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 대전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령 친화도 평가와 관련한 연구, 초고령 사회 서울시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 실제적인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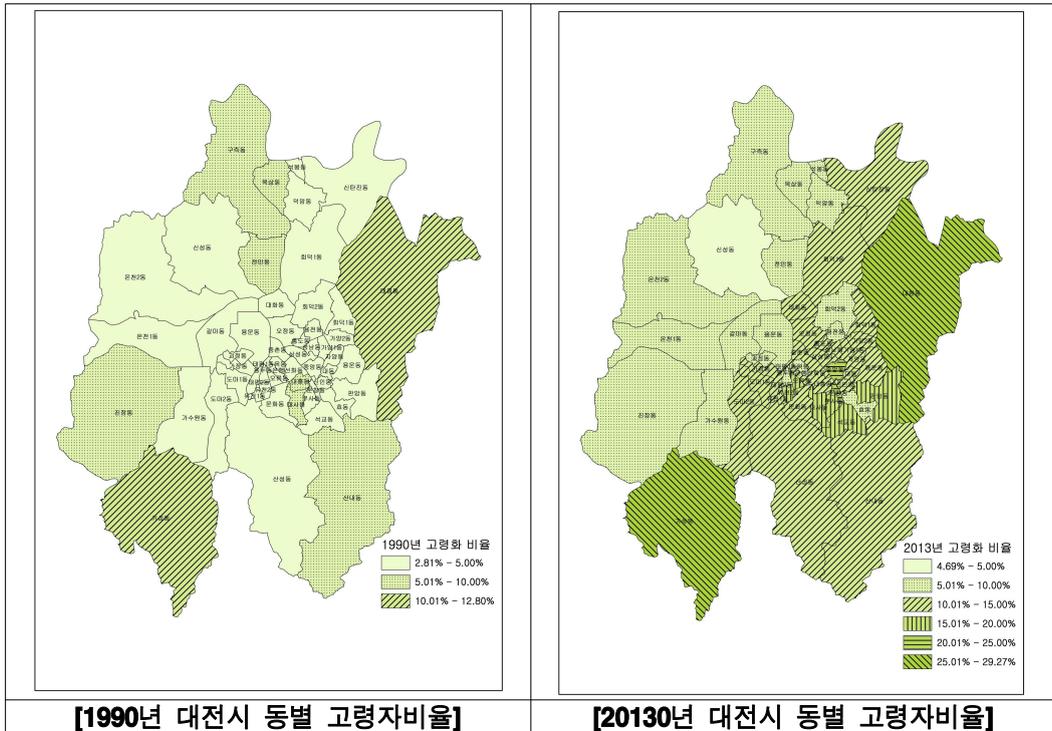
국제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WHO의 고령친화도시, EU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통합 정책 등이 있다.

제4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

1. 대전시 고령화 추세

대전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0년의 경우 2.64%에서 1990년 4.02%, 2000년 5.48%, 2010년 8.79% 그리고 2013년의 경우 9.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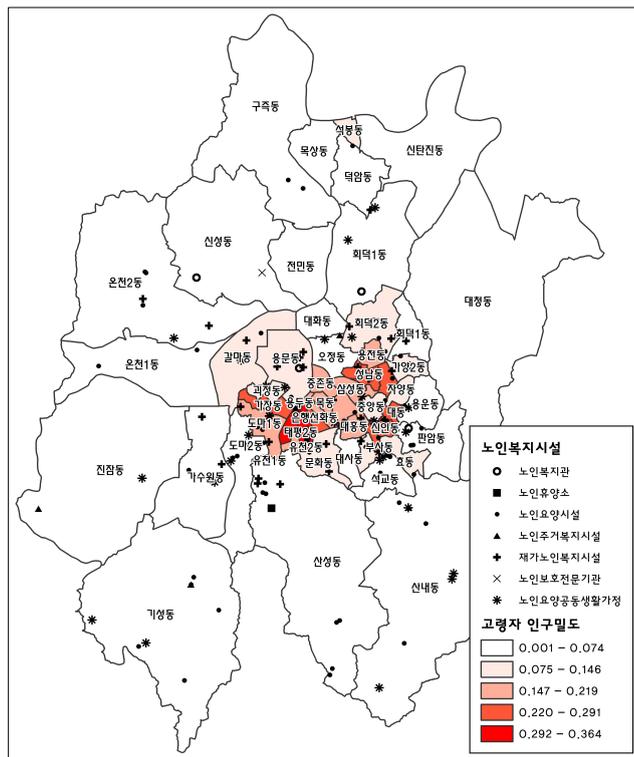
공간적으로 보면, 1990년의 경우 도시 외곽에 위치한 동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동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특히 유성구와 서구의 일부 신도심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전시 동남부 지역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서북부 지역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대전시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시설

대전시는 노인과 관련하여 6개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나,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는 미흡한 상태이며, 대전시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2014년 기준 수립 중에 있다.

대전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과'를 두고 있으며, 이 조직에는 노인정책, 노인건강, 노인시설 그리고 저출산보육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 내 고령자 관련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72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6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6개소,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가 있다.



[대전시 동별 고령자밀도와 노인복지시설 분포]

3. 고령자 인식

‘2013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대상 중 고령자 720명을 추출하여 고령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 고령자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약 60%), 일상의 교통수단은 도보가 전체의 57.5%를 차지하며,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으며(78.3%), 본인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71.1%로 높고,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집(56.1%), 경로당(27.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상교통수단, 노인 어려움 점, 주변 도움여부, 대화상대 여부, 본인 소득수준 만족도, 본인 소비수준 만족도 그리고 경제·사회적 위치 등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집(본인, 가족, 이웃집 등 포함)	404	56.1	56.1	56.1
	경로당, 노인(종합) 복지관 등	195	27.1	27.1	83.2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36	5.0	5.0	88.2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17	2.4	2.4	90.6
	근린공원, 산 등	28	3.9	3.9	94.4
	동호회 사무실 등	2	0.3	0.3	94.7
	기타	34	4.7	4.7	99.4
	직장(일터)	4	0.6	0.6	100.0
	합계	720	100.0	100.0	

4. 고령화 사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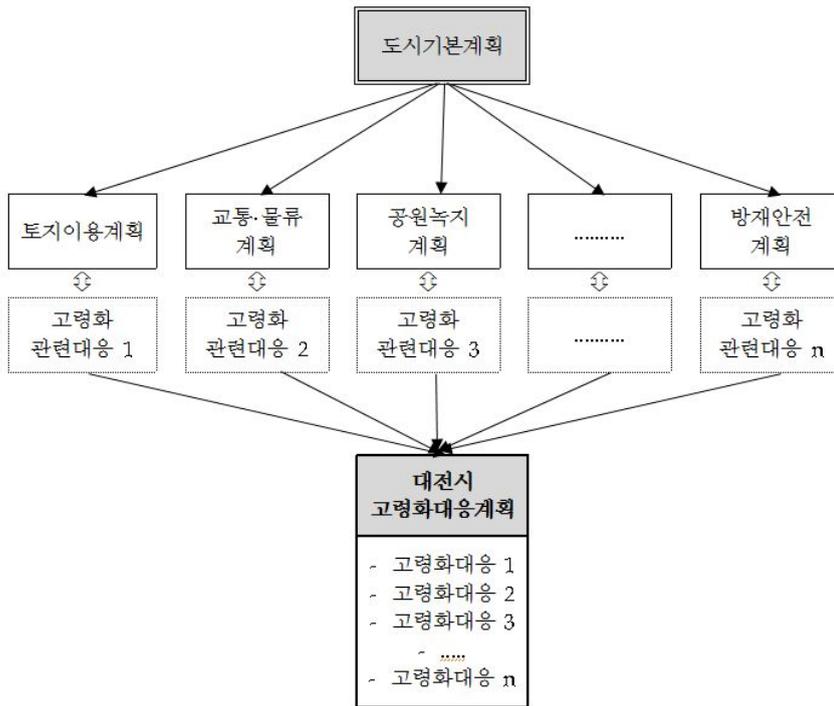
다양한 여건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고령화의 과제를 ① 고령화에 대한 대전시 대응방안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② 법제도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③ 계획적 대응을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이 요구되고, ④ 실증적 조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장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

1. 계획적 대응 방안

계획적 대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전도시기본계획 내 도시의 핵심이슈로 고령화를 다루어야 하며, 부문별로 고령화 대응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고령자나 취약자를 위한 고령자지구 또는 취약자지구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보행우선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과 연동하여 지정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이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고령화(취약자)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전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에서 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2. 법제도적 정비 방안

고령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정비 차원에서는 조례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 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전시도 이러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고령친화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고령친화도 평가제, 고령친화영향평가, 노인정책센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이상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가칭 「대전시 고령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 목적 : 조례의 목적
- 정의 : 고령친화, 고령친화도시 등에 대한 정의
- 대전광역시(또는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 고령자 실태조사 : 정기적인 고령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제도 등에 관한 내용
-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 고령사회 대책 등의 중요사항 심의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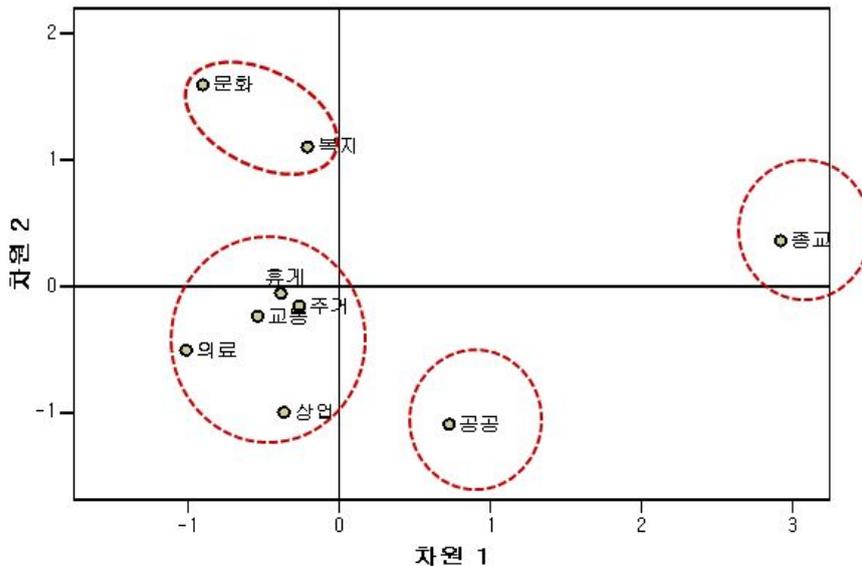
3. 고령자 시설 인접성 분석

고령자 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차원에서 대전시 중구 서대전공원을 방문하는 고령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는 대전시 고령자 생활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편안하다(45.6%)고 응답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전시가 해야 할 일로는 안전한 도시환경(25.6%)으로 응답하였다. 보행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9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을 분석한 결과, 집과 공원의 인접도가 5점 만점 척도에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와 문화원의 인접도는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차원척도법(MDS)에 의해 9개 고령자 관련시설간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Stress 값)는 보통(0.18016)이며 설명력(RSQ 값)은 0.87935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거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은 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복지시설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가장 독립적인 시설입지를 나타냈다.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화 시대 대전시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분석 및 결과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가칭)’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기존의 조례와 달리 복지측면 뿐만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대전시 고령친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앞서 제시한 조례에 기반하여 ‘대전시 고령화(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대전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로 고령화를 설정하고 목표체계 구상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구현 차원에서는 고령자지구나 위약자지구 등의 지정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시민 및 전문가들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제정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고령인구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고령자(노약자)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제2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9
제1절 고령자의 정의	9
제2절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	11
제3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	15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15
제2절 관련제도 고찰	2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9
제4절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	43
제4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	51
제1절 고령화 추세	51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시설	57
제3절 고령자 인식	67
제4절 고령화 사회의 과제	77
제5장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	81
제1절 계획적 대응 방안	81
제2절 법제도적 정비 방안	88
제3절 고령자 시설 인접성 분석	92

제6장 결론	10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0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13

- 표 목 차 -

<표 2- 1> 우리나라 법규상 고령자 및 노인의 연령에 대한 정의	10
<표 2- 2> 사회적 약자의 행태별 특성	12
<표 3- 1>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15
<표 3- 2>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화 추세	17
<표 3-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화 추세	20
<표 3- 4>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6개 분야별 세부사업	35
<표 3- 5>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38
<표 3- 6>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44
<표 3- 7>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	45
<표 3- 8> EU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통합 정책 : 부문별 세부사항	47
<표 4- 1>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세	51
<표 4- 2> 대전시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현황	53
<표 4- 3> 대전시 노인관련 자치법규	57
<표 4- 4> 저출산 고령사회과 주요 업무	59
<표 4- 5> 대전시 고령화 대응시책	60
<표 4- 6> 대전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61
<표 4- 7>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61
<표 4- 8>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3
<표 4- 9>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	64
<표 4-10> 대전시 노인휴양소 현황	64
<표 4-11> 대전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65
<표 4-12> 대전시 노인보호전문기관	65
<표 4-13> 조사대상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	68
<표 5- 1> 대전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 및 목표체계	82
<표 5- 2> 대전시 보행우선구역 사업대상지	85
<표 5- 3>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조례의 사례	88
<표 5- 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주요 내용	89
<표 5-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3

- 그림 목 차 -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4
(그림 1- 2) 연구의 흐름	6
(그림 3- 1) 우리나라 총인구 및 고령화인구 증가율 변화	16
(그림 3- 2)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자 비율 변화 : 1980년~2010년 변화	18
(그림 3-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화 비율의 변화	20
(그림 3- 4) 고령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21
(그림 4- 1) 1980년 - 2013년간 대전시 인구연령대별 점유비율의 변화	52
(그림 4- 2) 199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54
(그림 4- 3) 200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55
(그림 4- 4) 2013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56
(그림 4- 5) 대전시 동별 고령자밀도와 노인복지시설 분포	66
(그림 5- 1) 대전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에서 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83
(그림 5- 2)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순위	99
(그림 5- 3)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분석 결과	10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전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¹⁾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었으며²⁾, 향후에도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는 이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계획과 정책 추진이 진행되거나 또는 향후 예상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응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정책은 주로 복지 측면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만 고민·대응하여 해결된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변화 및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특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대전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향후 대전시 차원에서 다양한 법정 및 비법정 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고령화와 관련한 대전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및 주요 도시별 고령화 추세는 3장 1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참조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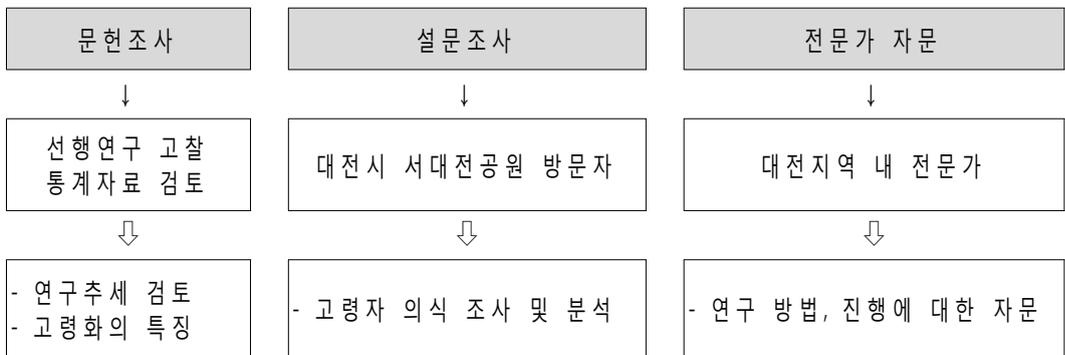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 1)과 같이,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수행된 연구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계획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령화와 관련한 연구의 추세 및 고려점 등을 검토하였다. 문헌조사의 한 방법으로, 고령화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대전시 고령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시 서대전공원을 찾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설배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연구의 방법론 및 설문내용 설정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차별 주요 내용은 (그림 1- 2)와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토록 한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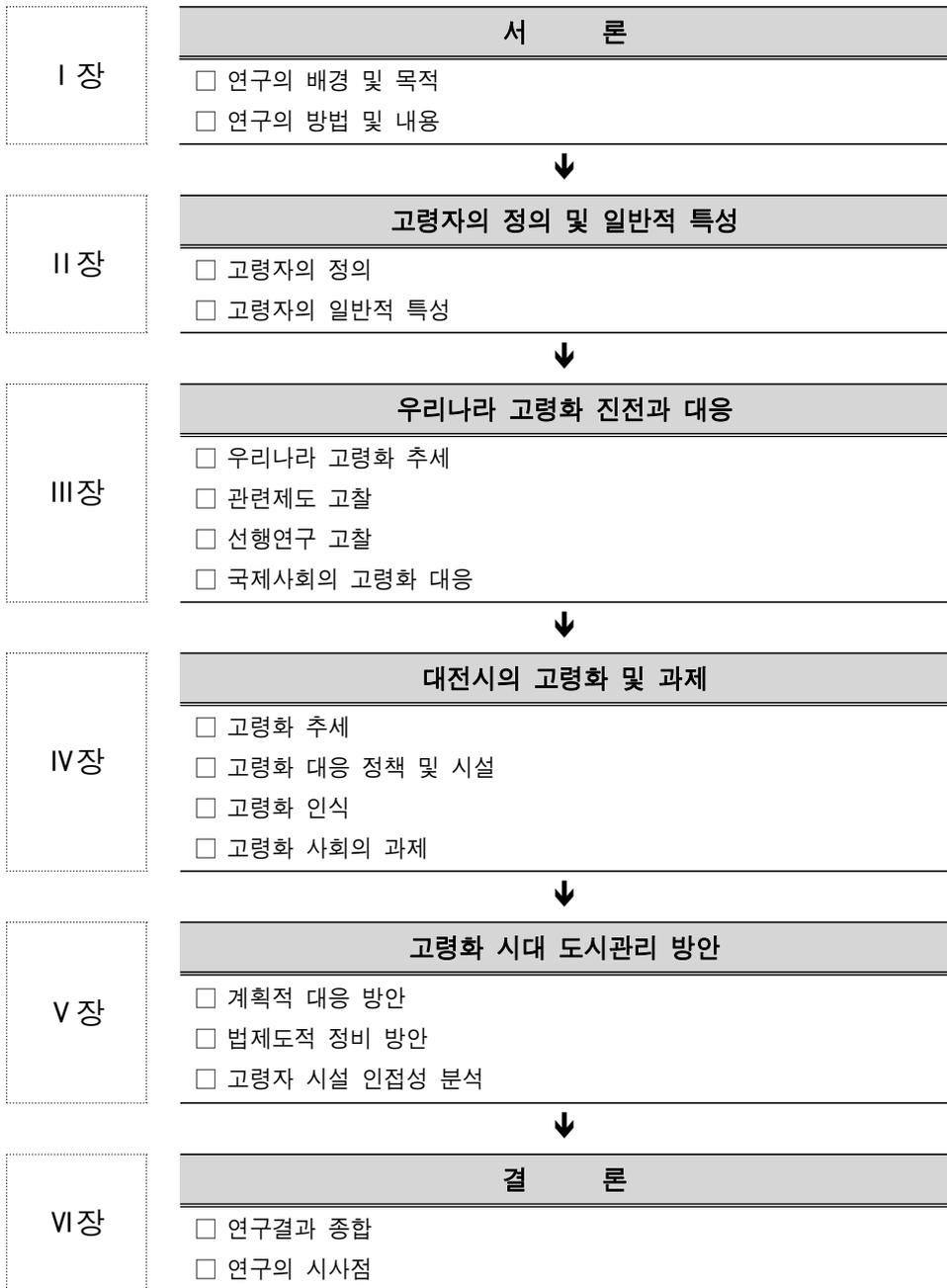
제2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연령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고령자의 정의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지역별 권역별로 살펴보았으며, 관련제도로써 법제와 주요 계획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고령화 관련연구 및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에서는 대전시 고령화 추세, 대응정책 그리고 고령자 관련시설의 규모 및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전시 고령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으로 계획적 대응, 법제도적 정비 및 고령자시설 배치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령자시설 배치방안(고령자시설 인접성 분석)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그림 1- 2) 연구의 흐름

제 2 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제1절 고령자의 정의

제2절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

제2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

제1절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高齡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또한 유사한 의미로서 노인(老人)³⁾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는 고령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대전시의 도시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범위(연령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나 노인과 관련한 법에 기초하여 고령자를 규정하고자 한다.

고령자와 노인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법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 등을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을 주거약자(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내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고령자 및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본 연구의 4장에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의식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를 55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3) 노인이란 의미는 '땅위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존경의 표시로서 '어르신'으로 부르는 등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채준섭, 2008, p.4)

<표 2- 1> 우리나라 법규상 고령자 및 노인의 연령에 대한 정의

법 령	정 의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절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⁴⁾

□ 신체적 특성

인간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체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신체 각 부위도 변화가 일어난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크기의 변화 외에도 신체기관 및 운동기관의 쇠퇴, 감각기관의 쇠퇴, 내장기능의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 심리적 특성

노인의 심리특성은 매우 다양하여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인을 이해하고 행태를 파악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노인은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획득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이전의 생활양식을 고집하게 되며, 그 때문에 새로운 생활양식, 설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만감, 위화감 등을 느끼게 된다. 지적능력과 관련해서는 학습능력 및 기억력 등 정신적 능력은 다른 정신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에 비해 퇴화가 늦은 편이며, 지능의 퇴화정도는 노인의 생활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사회적 특성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관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위와 역할의 변화이다. 주로 퇴직 등으로 인해 직업인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다. 대신 가족 내에 조부모로서의 역할과 의존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권위, 특권, 위신 등의 상실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자발적인 사회 참여도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노인은 개인적으로 좌절과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이는 노인 사회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주거환경의 불만족 요소를 낳는다.

4) 채준섭(2008) 등의 연구에서 발췌·정리하였음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고령자나 임산부 등의 통행 시 특성은 <표 2- 2>와 같다. 고령자나 임산부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동이 곤란하고, 무거운 화물을 들지 못하며 그리고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통행적 특성이 있다.

<표 2- 2> 사회적 약자의 행태별 특성

구 분	보조장치	통행 시 특성
지체장애인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이동이 곤란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 - 약간의 요철과 단차에도 통행 곤란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을 때의 동작이 힘들 - 이동거리의 제한
	목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 - 넘어지기 쉬움 - 보행능력이 약함 -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용하기 곤란하고 위험
시각장애인	지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팡이 진행방향의 앞을 두드리며 걸음 - 사행하기 쉬움 - 행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담이나 벽이 있는 곳에서는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 걸음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한 상황에서의 이동 곤란 - 무거운 화물을 들지 못함 -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출처 : 김유중 외, 2003, 도시설계학회

제 3 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제2절 관련제도 고찰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4절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

제3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1. 전국 시·도별 고령화 추세

□ 우리나라의 고령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표 3- 1>과 같다.

1980년 우리나라 총인구 37,406,815명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1,446,114명으로 전체 총인구의 3.87%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의 경우 총인구 43,390,374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2,239명으로 4.98%를 차지하게 된다. 2000년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3%를 차지하게 되며, 2010년의 경우 전체 인구 47,990,761명의 11.30%인 5,424,667명이 고령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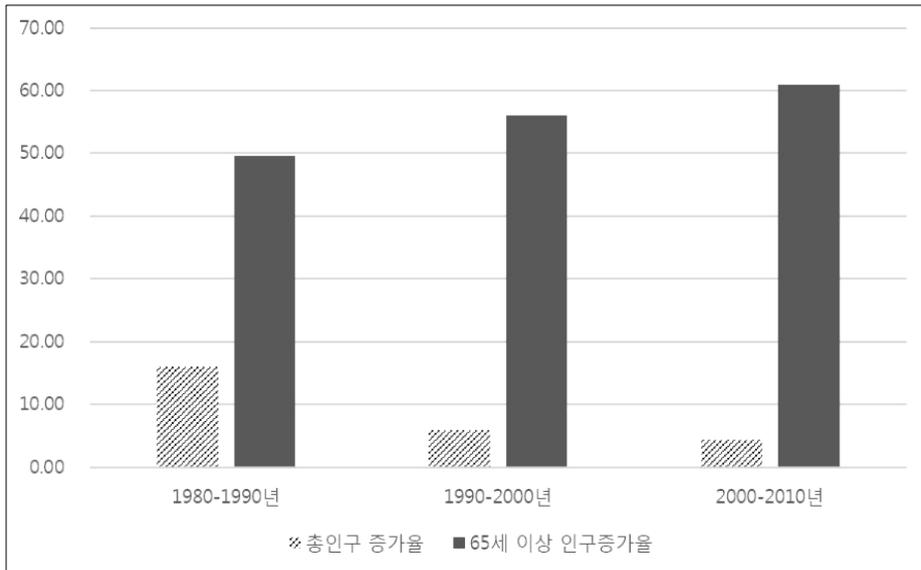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2010년간 총인구의 증가율은 구간별로 16.0%(1980년~1990년), 6.0%(1990년~2000년) 그리고 4.4%(2000년~2010년)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율은 동기간 동안 49.5%, 55.9% 그리고 60.9%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이다.

<표 3- 1>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총 인 구	인구수(명)	37,406,815	43,390,374	45,985,289	47,990,761
	증가율(%)	-	16.0	6.0	4.4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명)	1,446,114	2,162,239	3,371,806	5,424,667
	증가율(%)	-	49.5	55.9	60.9
65세 이상 점유비율(%)	비 율(%)	3.87	4.98	7.33	11.30
	비율변화(%)		1.11	2.35	3.97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

* 연령미상 제외



(그림 3- 1) 우리나라 총인구 및 고령화인구 증가율 변화

□ 시도별 고령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자 비율의 변화는 <표 3- 2>와 같다.

1980년의 경우, 충청북도의 고령자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5.12%로 그 다음 순위이다. 한편 부산시의 고령자 비율은 2.25%로 가장 낮다.

1990년의 경우 경상북도의 고령자 비율이 8.1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충청남도 (7.72%), 전라남도(7.65%) 등의 순이며, 부산시의 고령자 비율이 1980년과 같이 3.35%로 가장 낮다.

2000년에는 전라남도의 고령자 비율이 1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충청남도로 12.06%이다. 울산시의 고령자 비율은 4.04%로 가장 낮으며, 서울시의 고령자 비율은 5.43%로 상대적으로 낮다.

2010년에는 2000년과 동일하게 전라남도의 고령자 비율이 2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북도의 고령자 비율은 16.72%로 다음 순위이다. 반면 울산시의 고령자 비율은 7.01%로 가장 낮으며, 다음은 대전시로 고령자 비율이 8.79%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 비율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그림 3-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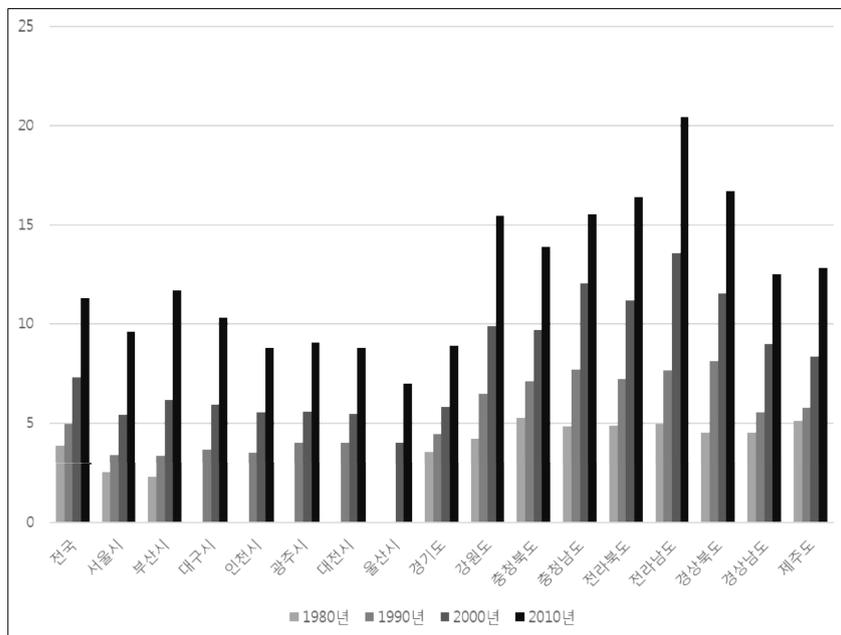
<표 3- 2>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화 추세

지 역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전국	인구(명)	37,406,815	43,390,374	45,985,289	47,990,761
	65세 이상(명)	1,446,114	2,162,239	3,371,806	5,424,667
	비율(%)	3.87	4.98	7.33	11.30
서울시	인구(명)	8,350,616	10,603,250	9,853,972	9,631,482
	65세 이상(명)	207,953	362,653	535,053	928,956
	비율(%)	2.49	3.42	5.43	9.64
부산시	인구(명)	3,156,931	3,795,892	3,655,437	3,393,191
	65세 이상(명)	71,145	127,130	225,414	397,130
	비율(%)	2.25	3.35	6.17	11.70
대구시	인구(명)		2,227,979	2,473,990	2,431,774
	65세 이상(명)		82,233	147,118	251,516
	비율(%)		3.69	5.95	10.34
인천시	인구(명)		1,816,328	2,466,338	2,632,035
	65세 이상(명)		63,963	136,654	232,199
	비율(%)		3.52	5.54	8.82
광주시	인구(명)		1,138,717	1,350,948	1,466,143
	65세 이상(명)		45,885	75,422	133,137
	비율(%)		4.03	5.58	9.08
대전시	인구(명)		1,049,122	1,365,961	1,490,158
	65세 이상(명)		42,189	74,734	131,015
	비율(%)		4.02	5.47	8.79
울산시	인구(명)			1,012,110	1,071,673
	65세 이상(명)			40,846	75,113
	비율(%)			4.04	7.01
경기도	인구(명)	4,930,335	6,154,359	8,937,752	11,196,053
	65세 이상(명)	174,871	272,951	519,256	998,567
	비율(%)	3.55	4.44	5.81	8.92
강원도	인구(명)	1,790,226	1,579,859	1,484,536	1,463,650
	65세 이상(명)	75,457	102,905	146,842	226,411
	비율(%)	4.21	6.51	9.89	15.47
충청북도	인구(명)	1,423,381	1,389,222	1,462,621	1,495,984
	65세 이상(명)	75,068	98,902	141,792	207,959
	비율(%)	5.27	7.12	9.69	13.90
충청남도	인구(명)	2,954,662	2,013,270	1,840,410	2,000,473
	65세 이상(명)	143,475	155,377	221,937	310,481

	비율(%)	4.86	7.72	12.06	15.52
전라북도	인구(명)	2,286,720	2,069,378	1,887,239	1,766,044
	65세 이상(명)	111,849	149,310	211,579	289,584
	비율(%)	4.89	7.22	11.21	16.40
전라남도	인구(명)	3,778,777	2,506,944	1,994,287	1,728,749
	65세 이상(명)	187,868	191,863	270,708	352,960
	비율(%)	4.97	7.65	13.57	20.42
경상북도	인구(명)	4,952,012	2,860,109	2,716,218	2,575,370
	65세 이상(명)	224,032	233,019	314,068	430,483
	비율(%)	4.52	8.15	11.56	16.72
경상남도	인구(명)	3,320,546	3,671,509	2,970,929	3,119,571
	65세 이상(명)	150,694	204,027	267,459	391,348
	비율(%)	4.54	5.56	9.00	12.54
제주도	인구(명)	462,609	514,436	512,541	528,411
	65세 이상(명)	23,702	29,832	42,924	67,808
	비율(%)	5.12	5.80	8.37	12.8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

* 연령미상 제외



(그림 3- 2)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자 비율 변화 : 1980년~2010년 변화

빨리 늙는 한국, 준비는 끝지

2030년 2.7명이 노인 1명 부양...초고령화 성큼

은퇴후 재취업 지원하고 연금 올타리 두껍게 세워 든든한 노후 마련해줘야

◆ 한국 고령화 쇼크 무방비 1부 / ① 연금으로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22개국 고령화대응지수



*자료=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2007~2009년 기준)

지난달 25일 65세 이상 노인 중 64%인 410만명 손에 첫 기초연금 20만원이 쥐어졌다. 연금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60대에게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이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은퇴 이민지로 뜨고 있는 뉴질랜드에선 모든 노인이 조건 없이 받는 노령연금을 시행 중이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은 매달 약 140만원을 받는다. 뉴질랜드 가구 평균 수입 대비 65%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개호보험 등으로 촘촘한 연금 `올타리`를 갖추고 있다. 미국에선 최하층 노인을 위한 재고용 프로그램(SCSEP)이 버팀목 구실을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SCSEP를 통해 취업한 노인은 4만 3809명에 달한다. 적어도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 고령화 선진국 모습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다. 지난해 기준 고령화율 12.2%로 고령화사회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쇼크`가 다가오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대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다.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특히 열악하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100여 년간 진행된 고령화가 한국에선 불과 20여 년 만에 이뤄지고 있다"며 "당장 관련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령화는 지속 성장을 위협한다.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킨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고령 인구 1명당 생산가능 인구가 2020년 4.6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2050년에는 1.5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지원으로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핀란드 등 고령화 선진국 5개국을 찾아 한국식 `고령화 모델`을 모색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4년 8월 8일 입력 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77554>)

2. 권역별 고령화 추세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인 비수도권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표 3-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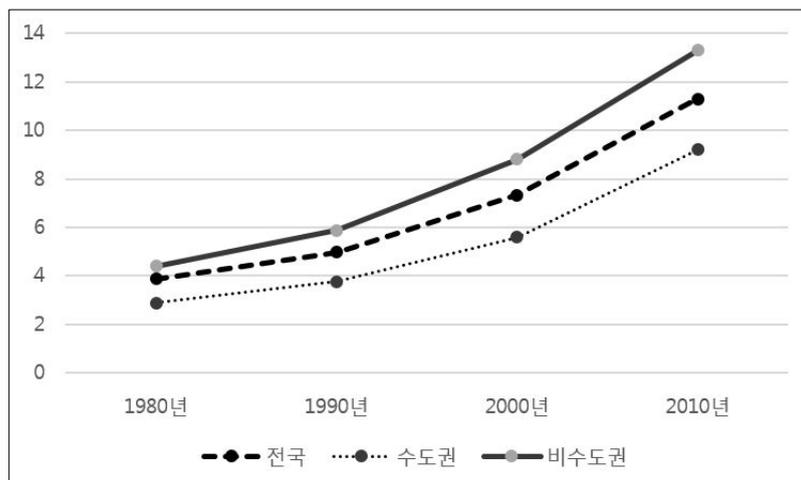
수도권의 고령자 비율은 1980년 2.88%에서 1990년 3.77%, 2000년 5.60% 그리고 2010년의 경우 9.21%로 변화하였으나, 비수도권지역의 고령자 비율은 1980년 4.41%에서 1990년 5.89%, 2000년 8.82% 그리고 2010년 13.31%로서 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령자 비율간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의 고령자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화 추세

지 역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전 국	인 구(명)	37,406,815	43,390,374	45,985,289	47,990,761
	65세 이상(명)	1,446,114	2,162,239	3,371,806	5,424,667
	비 율(%)	3.87	4.98	7.33	11.30
수도권	인 구(명)	13,280,951	18,573,937	21,258,062	23,459,570
	65세 이상(명)	382,824	699,567	1,190,963	2,159,722
	비 율(%)	2.88	3.77	5.60	9.21
비수도권	인 구(명)	24,125,864	24,816,437	24,727,227	24,531,191
	65세 이상(명)	1,063,290	1,462,672	2,180,843	3,264,945
	비 율(%)	4.41	5.89	8.82	13.31
비율차이	비수-수도	1.52	2.13	3.22	4.1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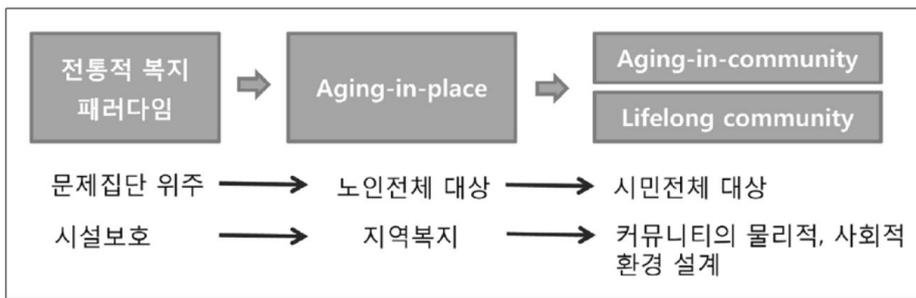
(그림 3-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화 비율의 변화

3. 고령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⁵⁾

과거 90년대 이전의 고령화 정책은 문제를 가진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의 확충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노후(ageing-in place)란 개념이 강조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고령자가 아닌 고령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보호의 형태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과거 행해지던 취약노인의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home)에서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개조와 지역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국내외 고령화 정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in community)’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노후(ageing-in place)란 개념을 거주지(home)에서 지역사회(community)로 확대한 개념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살기 좋은 지역사회, 즉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ageing-friendly community)를 조성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림 3- 4)와 같다.



(그림 3- 4) 고령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5) 김경혜 등(2010)의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에서 발췌·정리하였음

제2절 관련제도 고찰

1. 관련 법규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의 생활안정 등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고, 공급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

중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시장 등은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조의 2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시장 등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며, 이 법에서는 이러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보행우선구역,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지정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람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고령화 관련 법규 요약

관련법규	목 적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의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노인복지시설 제시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함	- 주거지원계획 수립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대상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등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조치 등

2.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2011년 수립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 그리고 '노인 100만 시대, 100세 도시 서울,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였다.

이들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대한민국정부, 2011)

□ 추진방향

제2차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95개 과제
 -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추진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 78개 과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58개 과제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전략적 홍보·교육,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국민운동 확산, 정책 효과성 제

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체계 구축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을 대상으로 노인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및 경제활동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제화 및 인증 확대
 -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게이트볼장 등 노인이용이 많은 시설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속 확대 : '10. 5월말 기준, 노인보호구역 235개소 지정·관리 중
- 고령운전자 안정교육 추진
-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 농촌 가사도우미
 - 노인 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노인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2)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노인 100만 시대, 100세 도시 서울(서울시, 2010)⁶⁾

□ 개요

2010년 서울시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담고 있다.

6) 민현석(2012)의 연구내용에서 발췌·정리하였음

□ 주요 내용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6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로 나눠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6대 분야는 ① 건강한 노후, ② 활기찬 생활, ③ 생산적 노년, ④ 통합적 사회, ⑤ 편리한 환경, ⑥ 인프라 재설계이며,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표 3-4>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6개 분야별 세부사업

분야	추진방향	세부사업		
① 건강한 노후	건강증진 지원 강화	·노인스포츠·체조 개발보급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활성화	·노인건강 영양증진지원 ·노인 운동전문가 운영	·실버용품 개발 보급 활성화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
	요양보호 서비스 확충	·메이커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개선	·병원치료비 후불제(병원비 전용 카드) 도입	·노인 안심돌봄서비스 확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강화
	질병예방 시스템 강화	·노인대상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치매도달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주치의 확대 ·도시노인건강운동 연구·개발 활성화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서비스 기능강화
② 활기찬 생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 ·자치구별 실버문화예술단 운영	·노인전용 실버방송 개설·운영 ·노노케어 확대	·고령자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여가·문화 기회 확대	·노인종합휴양타운 조성 ·실버극장 확대운영 ·동네 실버텃밭, 농장 조성	·경로당문화 르네상스 ·실버 갤러리, 공연장 권역별 설치 운영	·어르신 행복 콘서트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평생학습(교육)기회 확대	·대학교육기회 확대 ·평생학습 기회 확대 ·예비노인 노후대비 교육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시민대학 노인 프로그램 확대 ·실버도서관 운영	·싱글 어르신 홀로서기 ·실버 어르신 홀로서기 ·학교시설활용 노인프로그램 확대
③ 생산적 노년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실버희망통장 도입	·노인관련시설 고용구조 개선 ·경력활용 인턴제	·행정기관 내 퇴직공무원 활용 활성화 ·노인고용 쿼터제 강화추진
	취업·창업 교육·훈련 확대	·고령자 취업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여성노인 인력개발·일자리지원	·예비노인 직업 교육·훈련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노인창업(시니어클럽) 지원·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고령자 육성지원
④ 통합적 사회	권익증진 확대	·서울노인헌장 제정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노인복지 ombudsman제도 시행 ·노인복지 마일리지카드 도입	·어르신 상담센터 확대 및 강화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세대통합 조성	·건강한 노인가정 만들기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안심콜 서비스 ·노인대상 봉사활동 강화	·1·3세대 통합·이해증진(과거제, 운동회 등)
	인식문화개선 확대	·경로수당(효행수당) 도입 ·효문화진흥원 설립 운영 ·경로우대문화 확산	·노인생애 체험센터 운영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해피엔딩프로그램 활성화 ·문화행사 요금할인 등 노인동반자 우대
⑤ 편리한 환경	이동편의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개선	·고령친화버스정류소 이용환경 조성 ·지하철 도우미
	일상생활 편의제공	·어르신 안전지킴이 ·노인헬프센터 설치 ·노년생호라 가이드북 제작배부	·중로노인 문화벨트 조성 ·화장시설 확충 및 자연장 조성	·휴대전화 노인정보 문자서비스 ·고령친화 동네공원 조성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고령친화주택) 도입	·고령자용 임대주택 보급 ·고령친화 주택 개량	·고령친화형 소규모 주택공급
⑥ 시설 재설계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품질관리	·어르신 정보센터 설치운영	

인프라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제도적 기반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제정	·고령사회 기본조례 제정 ·고령자 영향평가제도
	정책추진 역 량강화	·노인정책센터 기능강화 ·노인관련단체 네트워크 강화	·서울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노인정책 추진 역량강화
			·고령친화도 평가제 도입 ·노인복지 민간참여 확대 유도

3)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서울시, 2011)7)

□ 개요

서울시는 2011년 7월 ‘서울 노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11년), 고령친화도 평가제도입(‘12년), 모니터링 및 피드백(‘13년), WHO 인증(‘14년) 등과 같은 내용(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2011년)

서울시는 서울시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학계, 현장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및 공동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8대 분야(①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② 교통편의 환경, ③ 주거편의 환경, ④ 지역사회 활동참여, ⑤ 사회적 존중 및 포용, ⑥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⑦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⑧ 지역복지 및 보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고령친화도시 평가제 도입(2012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서울시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과정을 통하여 정책수단과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고령친화도시 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국내외

7) 민현석(2012)의 연구내용에서 발췌·정리하였음

유사 평가시스템을 검토·분석하여 평가시스템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2013년)

서울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획득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층별,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항목·운영지침 등을 개발함으로써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 및 해석의 왜곡 등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2014년)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의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①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② 교통편의 환경, ③ 주거편의 환경, ④ 지역사회 활동참여, ⑤ 사회적 존중 및 포용, ⑥ 고령지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⑦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⑧ 지역복지 및 보건 8대 분야에 대한 정책, 서비스, 사회환경 및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4) 9988 어르신 프로젝트(서울시,)⁸⁾

□ 개요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99세 이상까지 88하고 건강하게 살자'라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든 노인들이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사전적·예방적 사업을 제안하였다.

□ 주요 내용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① 치매걱정 없는 서울, ② 일하는 노후, ③ 노인건강 지원, ④ 신바람 노인문화, ⑤ 세대통합 지원, ⑥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⑦ 어르신

8) 민현석(2012)의 연구에서 발췌·정리하였음

행복타운 건립의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세부사업은 <표 3- 5>와 같다.

<표 3- 5>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분야	실천과제	세부사업
① 치매 걱정 없는 서울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공공건물 활용형 데이케어센터,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기존 경로당 활용 데이케어센터,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시설 병설형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인증	영역별(기본요건, 맞춤형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로 17개 하위 영역 36개 지표로 구성,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환경, 인력 등 제시, 이용자들에 대한 케어서비스의 적정수준 제시, 최소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인증 제외기준 적용
② 일하는 노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시니어전문 자원봉사단	만 60세 이상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소지한 자로 구성, 돌봄이 필요한 재가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8개 활동분야(보건 의료, 상담서비스, 문화예술, 통역, 학습지도, IT, 케어, 언론취재)로 나누어 추진
③ 노인 건강지원	어르신 상담센터 개설운영	노인성문제, 이혼 및 재혼, 법률문제, 노인학대·가족갈등·우울증·자살·건강관리 등에 관한 상담 실시
	노인주치의 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대한 정기적 의료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가정방문, 병원내방진료, 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의약품 관리, 투약지도, 혈압·혈당 체크, 물리치료 등 지원
	서울 백세인 연구	백세인 방문·면담을 통한 백세인 특성 조사, 가족, 지역환경 등 백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조사, 외국 및 지방도시의 백세인 연구와 비교연구, 서울의 장수환경 및 장수요인 모델 도출
	도시노인 건강운동 연구소	노인건강운동 표준모델 및 맞춤형 운동기법 개발, 노인 건강운동 지도자(전문지도자, 노인지도자) 교육 실시
	노인성문화 조사	서울시 거주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심층면적 실시
④ 신바람 노인문화	9988 어르신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6개 예술단의 드레스 리허설 타임을 이용한 무료 관람, 9988 특별기획 공연, 찾아가는 9988콘서트 개최
	실버문화예술 교육 활동 지원	노인예술 창작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문화예술활동가 양성(문화예술강사, 어르신기자 자원봉사단)
	어르신 서울투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고궁, 청계천, 한옥마을 등 서울시내 관광 실시
	실버 영화관 운영	허리우드 극장 클래식관(300석)에 57세 이상 노인 대상의 영화관 운영 및 노인들이 선호하는 영화 상영
⑤ 세대 통합지원	학교 IT정보화교실	인터넷, 트위터, 휴대폰활용, 문서작성, 전자우편 등 강좌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노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노년상, 노후생활설계, 노년기 여가활용,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생활법률상식 등 교육
⑥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임대주택단지 1-2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 노인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에 따라 무장애설계, 세곡지구 4단지 고령자 전용 주택 시범단지 건설
	노인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환경개선(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보차도 구분 등)
	RF교통카드 전환	1회용 무임승차권을 우대용 교통카드로 무료 발급
⑦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9988복지센터, 어르신행복타운 조성 계획	복지프로그램을 통합적,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 인프라구축, 노인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누구나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형성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윤주현 등(2004), 임병호(2007), 김선자 외(2008), 김태일(2009), 김경혜 등(2010), 민현석(2012) 등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주현 등(2004)은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문제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서, 개인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건강 및 경제력의 약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기초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비용부담이 큰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정책은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및 운영, 주거비 보조, 의료 및 생활서비스 연계가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등 기반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간구분 목표	단기	중기	장기
기반구축	노인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민간임대운업을 위한 기반구축	
재고확대		다양성 노인주택 재고 확대	
임대운영		공공주택 임대운영 시범단계	민간 임대운영 확대

임병호(2007)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를 대상으로 고령화로 대비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에 어떠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적 차원의 접근방안으로는 보다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복지측면의 계획과 공간계획측면의 계획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불균형적 배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고령자들은 보행으로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고령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선자 외(2008)는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령친화도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였다.

구 분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배점
가치 및 정책기반	존경과 배려	- 노인에 대한 존경/배려	5	5-25점
	고령친화적 정책기반	- 서울시의 노인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3	3-15점
기본적 욕구보장	기초생활	- 기초생활 현황 - 주택관련 사항	5	5-25점
	안전	- 노인안전에 대한 의견 - 사고관련 불안감 - 사고관련 경험	5	5-25점
물리적 환경	교통시설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의견 - 무료셔틀버스 관련 사항	6	6-30점
	도시환경	-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 - 시설 사용 용이성	6	6-30점
사회참여	사회적 활동	- 노인들의 사회참여	5	5-25점
	취업과 교육	- 노인들의 취업 - 노인대상의 교육	5	5-25점
보호 및 서비스	지역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5	5-25점
	건강 및 의료서비스	- 건강 및 의료서비스 현황	4	4-20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구성,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경제상황, 경제활동, 생활비충당		

김태일(2009)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환경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주택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의 접근’이란 논설을 기고하였다. 저자는 이 글에서 고령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나 보건,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계층에 대한 처우문제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노인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혹은 가능하도록 재가(在家)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더욱 중요하며, 즉 양질의 고령자 주택공급, 그리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저자는 고령인구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복지의 기능강화라는 큰 틀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그리고 아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기능의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등 지역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응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고령화 대응주택(Universal Designed Housing)의 개발과 보급, 둘째 지역사회 내의 기존시설 활용에 의한 지역복지기능의 강화⁹⁾, 셋째 주택과 의료, 보건, 복지시설과의 연계 정비, 넷째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의 보장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혜 등(2010)은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30년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로 ① 이동성과 접근성 증대 ②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 ③ 다양한 노인주거 옵션 개발 등 3가지 고령친화적 공간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민현석(2012)은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을 중심으로’ 연구

9) 대다수의 고령자는 살아왔던 주택,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고령자의 희망과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옮겨 살 수 밖에 없고, 계속 살려고 하여도 고령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주택, 적절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김태일, 2009, p.49)

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고령친화형 마을'을 '근린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하나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인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근린(Neighborhood)'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화동을 대상으로 수립한 고령친화형 마을의 실현을 위한 사업은 소로계단의 보행환경 정비, 고령자를 위한 집수리 매뉴얼 작성, 노인보호구역 확장(울곡로 19길), 마을사람들을 위한 쉼터·텃밭 조성, 주민들과 함께 골목환경 개선(꽃길 조성),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상담서비스 제공, 세대 교류형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등이다. 한편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추진 사업은 노인전용임대주택 공급, 주민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외부전문가·지역활동가와의 교류 확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등이다.

제4절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¹⁰⁾

1.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1) 개요

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위한 UN의 노력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노인이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UN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인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1982년에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하는 한편, 1991년 UN 총회를 통하여 각국의 노인관련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으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은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돌봄(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에 이르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5개 항목 아래 18개의 세부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민현석(2012)의 연구에서 발췌·정리하였음

<표 3- 6>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항 목	원 칙
<p align="center">자립 (Independ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p align="center">참여 (Particip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 형성
<p align="center">돌봄(Ca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 -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 이용 -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
<p align="center">자아실현 (Self-fulfill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 추구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
<p align="center">존엄성(Dig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움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

출처 : 보건복지부, 2000,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WHO의 고령친화도시

WHO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활기찬 노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실천을 위하여 ①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② 교통편의 환경, ③ 주거편의 환경, ④ 지역사회 활동참여, ⑤ 사회적 존중 및 포용, ⑥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⑦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⑧ 지역복지 및 지원 등 8개 항목에 대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표 3- 7>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

주제영역	세부영역
①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환경, 녹지공간과 보도, 야외의자, 인도, 도로, 교통, 자전거도로, 안전성(치안), 서비스시설, 건물접근성, 공중화장실
② 교통편의 환경	저렴한 비용, 대중교통의 신뢰성과 배차시간, 목적지 연계, 노령친화적 차량, 장애 노년층 서비스, 노약자 우대석, 운전자, 안전함과 편안함, 정류장과 역, 정보제공, 지역사회 교통, 택시, 도로, 운전자 자질, 주차
③ 주거편의 환경	저렴한 비용, 필수공공서비스, 설계, 개조, 관리서비스, 가정에서의 노령화, 지역사회에 통합, 주거선택권, 주거시설, 생활환경
④ 지역사회 활동참여	행사와 활동의 접근성, 저렴한 비용, 행사와 활동에 대한 폭넓은 선택기회, 시설과 장소, 프로그램 홍보와 장려, 소외 노년층 대처, 공동체 통합의 증진
⑤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존중과 포용을 강화하는 서비스, 노령화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세대통합과 가족간 상호작용, 공교육, 지역사회의 포용, 경제적 포용
⑥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자원봉사 선택권, 고용선택권, 교육, 접근성, 시민참여, 사회기여 존중, 창업, 보수
⑦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정보제공, 구두 의사소통, 활자 정보, 평이한 언어, 자동화된 의사소통과 기기, 컴퓨터와 인터넷
⑧ 지역복지 및 지원	접근 용이한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제공, 자원봉사자 확충, 응급조치 대책과 관리

출처 : WHO, 2007, Gol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3. EU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통합 정책

1) 개요

‘고령화 대책 국제회의(MIPAA)’ 수립 및 ‘활기찬 노년기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 지정

EU는 2002년 4월 마드리드에서 ‘고령화 대책 국제계획(MIPAA)’을 수립하였으며 고령화 대책 국제계획을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2012년을 ‘활기찬 노년기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EY2012)’로 지정하였다.

한편 고령화 대책 국제계획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의존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조기 은퇴방지 및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① 일자리에서의 노인참여 유지, ②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권고, ③ 자택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④ 세대 간 결속 및 협동 강화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언급하였다.

2) 주요 내용

고용부문, 지역사회부문, 독립생활부문에 이르는 부문별 세부사항 제시

EU는 활기찬 노년생활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하여 고용부문, 지역사회부문, 독립생활부문에 이르는 부문별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용부문에서는 기대수명 증가, 연금수령 연령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일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연령차별 퇴치, 의사소통 연락망 구축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고용과 관련된 주체인 정책입안자, 비영리 단체, 연구자 및 대학, 고용주, 협동조합·기능조합 등이 지원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부문에서는 노인들이 은퇴 후 무료한 생활에 대한 두려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가정 내 보호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 완화, 시민들 간 대화유도, 세대 간 유대 증진, 접근성 개선, 빈곤대처 등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체인 정책입안자, 비영리 단체, 연구자 및 대학, 고용주 등이 지원

해야 할 세부사항을 도출하였다.

독립생활부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쇠퇴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고령자가 처한 환경에서 일부를 조금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늦추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입안자, 기업,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연구자 및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이 지원해야 할 세부사항을 도출하였다.

<표 3- 8> EU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통합 정책 : 부문별 세부사항

부문	구분	세부사항	
고용 부문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 점진적인 은퇴 방법 모색 및 근무유연제 등 도입 - 구직취약계층(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약자)의 노동가능성 증진 - 일용직, 야간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 연금관련 규제, 노동법 등의 재정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지의 배려 - 점진적인 은퇴계획 권장 및 자원봉사참여를 통한 점진적 은퇴 지원 - 건강보험, 연금 등의 수령 권리, 고용지원 제공 - 가족, 돌봄의 책임을 남녀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연령차별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서 연령차별이 없도록 법적 제도 확립 - 노인근로자들의 사회적 공헌과 높은 생산성 홍보를 통한 대중인식 변화 - 이민자 노인들과 소수민족 노인들의 차별 고려 - 여성노인의 짧은 근무해수 및 금전적 보상감소 현상 등 불평등 해소 	
	의사소통 연락망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관련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 및 훈련기회 이용 	
	관련 주체 로 지원 해야 할 사항	정책입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비공식적 보호자 지원 방안 - 노인구직자 직종을 세분화하여 제시
		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해 협동조합, 기능조합 등과 연계 - 노인들의 풍부한 인생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교육하고, 조연제시 - 세대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 및 소개
		연구자 및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연구 - 노인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 - 공평한 임금체계 확립 - 위험요소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및 점검 -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노인근로자에 대한 배려 - 유연, 탄력근무제 도입 -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선출을 통한 의견반영

		협동조합/ 기능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관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노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수집·배포 - 비영리기관과 연계를 통해 노인근로자 차별을 이취화하여 차별방지
지역 사회 부문		사회적 배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노인참여 내용 증설 -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 가능한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자료 제공
		시민들 간의 대화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권장 및 강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 마련
		세대 간의 유대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지도 등 젊은 세대와 공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다각화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교통부문에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빈곤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연금 수령액을 합당한 수준에서 책정하여 노인빈곤 예방 - 고용주들의 윤리의식 촉구 및 노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초고령 여성노인 등 빈곤위험이 큰 노인계층을 위한 대책 논의
	관련주체 별로 지원 해야 할 사항	정책입안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차별이 없는 디자인을 통해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
지역 사회 부문		비영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노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할 수 있는 접근방식 지지
		연구자 및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봉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는지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연구 -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동과제 수행에서의 장벽 분석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고객의 욕구 파악 및 디자인 반영 - 비영리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인욕구 파악 - 노인근로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근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
독립 생활 부문		정책입안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투자 - 건강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 - 노인의 권익 보호 -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독려 - 추후 보건의료 정책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중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시장 내 노인인구 확대 인식 및 이에 대응한 시장변화 예측 - 노인들에 맞는 약물, 의료기기 등 개발 및 테스트
		사회복지 서비스종 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서비스와 사회돌봄 서비스간 연계 확보 - 노인들의 집, 사회환경 등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 프로그램 제공 - 노인내담자의 경우 정신건강상태를 특별히 신경쓰도록 지도 - 담당전문가들의 교육 시 훈련지도에 노인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의견반영
		연구자 및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 전문가 배출 증가 - 간호학 과정에 노인들의 독립생활에 도움 주는 기기사용 등에 대한 교육
		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병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방문프로그램 시행 - 세대 간에 협동 가능한 과제개발, 지역사회 내 생활·건강한 생활 습관 독려

출처 : AGE Platform Europe, 2011, European Year for Active Ag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ors

제 4 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

제1절 고령화 추세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시설

제3절 고령자 인식

제4절 고령화 사회의 과제

제4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

제1절 고령화 추세

1. 인구 측면

(1) 대전시 고령자 및 독거노인 현황

1980년대 이후 대전시의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세는 <표 4-1>과 같다.

1980년 전체인구 651,358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17,21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였다. 1990년의 경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2%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5.48% 그리고 2010년의 경우 8.79%로 증가하였다.

2013년 대전시 인구는 1,532,811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50,651명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83%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0.07%, 1990년 0.17%, 2000년 0.29%, 2010년 0.61% 그리고 2013년 0.75%로 평균수명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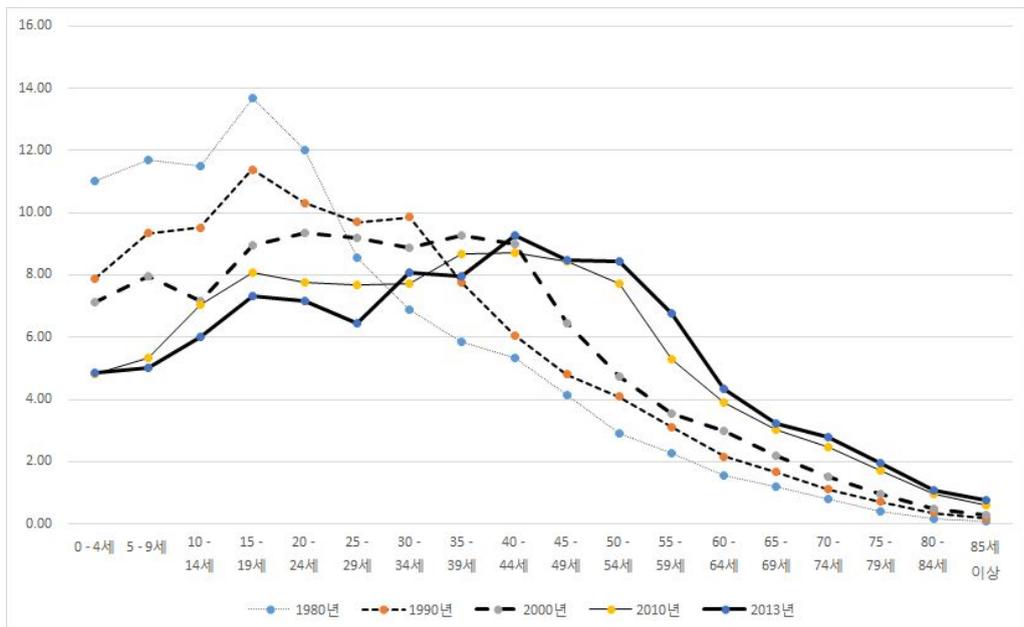
<표 4-1> 대전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세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3년	
	인구 (명)	점유 비(%)								
계	651,358	100.00	1,049,122	100.00	1,365,961	100.00	1,490,158	100.00	1,532,811	100.00
0-4세	71,625	11.00	82,785	7.89	97,102	7.11	71,984	4.83	74,283	4.85
5-9세	76,062	11.68	97,854	9.33	108,412	7.94	79,733	5.35	77,106	5.03
10-14세	74,830	11.49	99,916	9.52	98,115	7.18	104,938	7.04	92,264	6.02
15-19세	89,057	13.67	119,530	11.39	122,077	8.94	120,208	8.07	112,257	7.32
20-24세	78,165	12.00	108,192	10.31	127,836	9.36	115,453	7.75	109,715	7.16
25-29세	55,831	8.57	101,747	9.70	125,344	9.18	114,615	7.69	99,036	6.46

30-34세	44,750	6.87	103,408	9.86	121,391	8.89	115,328	7.74	123,890	8.08
35-39세	38,083	5.85	81,185	7.74	126,466	9.26	129,017	8.66	122,063	7.96
40-44세	34,675	5.32	63,554	6.06	122,708	8.98	129,921	8.72	142,067	9.27
45-49세	26,993	4.14	50,426	4.81	87,788	6.43	125,691	8.43	129,923	8.48
50-54세	19,015	2.92	42,883	4.09	64,459	4.72	114,889	7.71	129,220	8.43
55-59세	14,891	2.29	32,704	3.12	48,689	3.56	79,161	5.31	103,534	6.75
60-64세	10,166	1.56	22,740	2.17	40,565	2.97	58,205	3.91	66,802	4.36
65-69세	7,744	1.19	17,460	1.66	30,200	2.21	45,104	3.03	49,748	3.25
70-74세	5,184	0.80	11,621	1.11	20,440	1.50	36,955	2.48	42,739	2.79
75-79세	2,664	0.41	7,547	0.72	13,368	0.98	25,494	1.71	29,917	1.95
80-84세	1,152	0.18	3,829	0.36	6,820	0.50	14,406	0.97	16,789	1.10
85세이상	471	0.07	1,732	0.17	3,906	0.29	9,056	0.61	11,458	0.75
65세이상	17,215	2.64	42,189	4.02	74,734	5.48	131,015	8.79	150,651	9.8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

주 : 연령미상은 삭제하였음



(그림 4-1) 1980년 - 2013년간 대전시 인구연령대별 점유비율의 변화

2013년 12월 기준 대전시에는 총 150,651명의 65세 이상 고령자(노인)가 분포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가 42,495명으로 가장 많고, 대덕구는 20,205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이들 고령자 중 독거노인수는 약 21.7%인 32,689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약 23.9%인 7,811명이다. 구별로 보면, 서구가 2,4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동구가 2,302명 순이며, 유성구의 경우 470명으로 가장 적다.

즉 고령자 5명중 1명은 독거노인이며, 독거노인 4명당 1명은 기초수급자라는 것으로 고령자 및 독거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2> 대전시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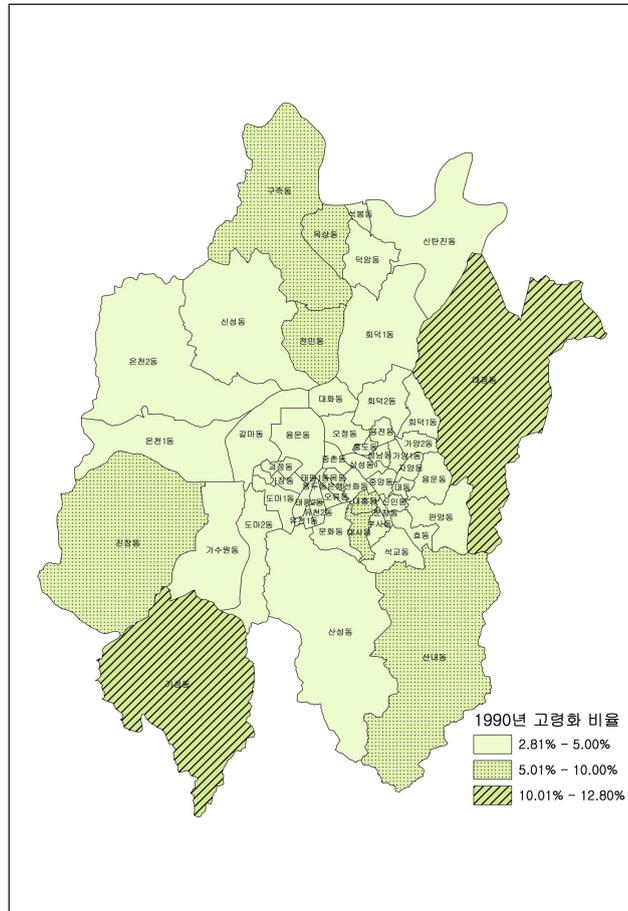
구 별	총인구 (명)	만 65세 이상 노인수(명)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수		
			계(명)	기초수급자(명)	일반(명)
합 계	1,532,811	150,651	32,689	7,811	24,878
동 구	250,653	32,348	8,330	2,302	6,028
중 구	264,913	34,483	7,784	1,507	6,277
서 구	498,917	42,495	7,929	2,487	5,442
유성구	313,968	21,120	3,884	470	3,414
대덕구	204,360	20,205	4,762	1,045	3,717

자료 : 대전시청 홈페이지(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 공간적 고령화 추세

□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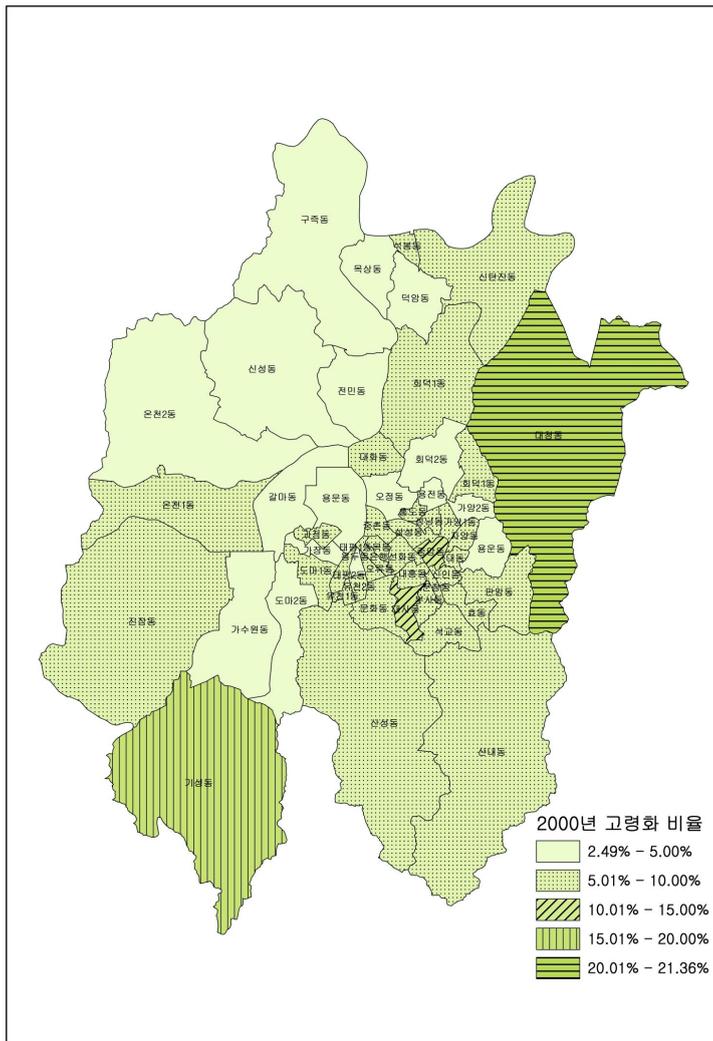
199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고령자수/동별인구)을 도출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한 동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성구 구즉동, 목상동, 전민동, 진잠동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동구의 대청동, 중구의 산내동 그리고 서구의 기성동에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심지역에서는 대흥동과 대사동의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199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 2000년

200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4-3)과 같다. 2000년의 경우 동구 대청동과 서구 기성동의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1990년에 비해 고령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며 대전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대덕구의 경우 신탄진동과 회덕동 등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도심권에서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점이 1990년 고령화 분포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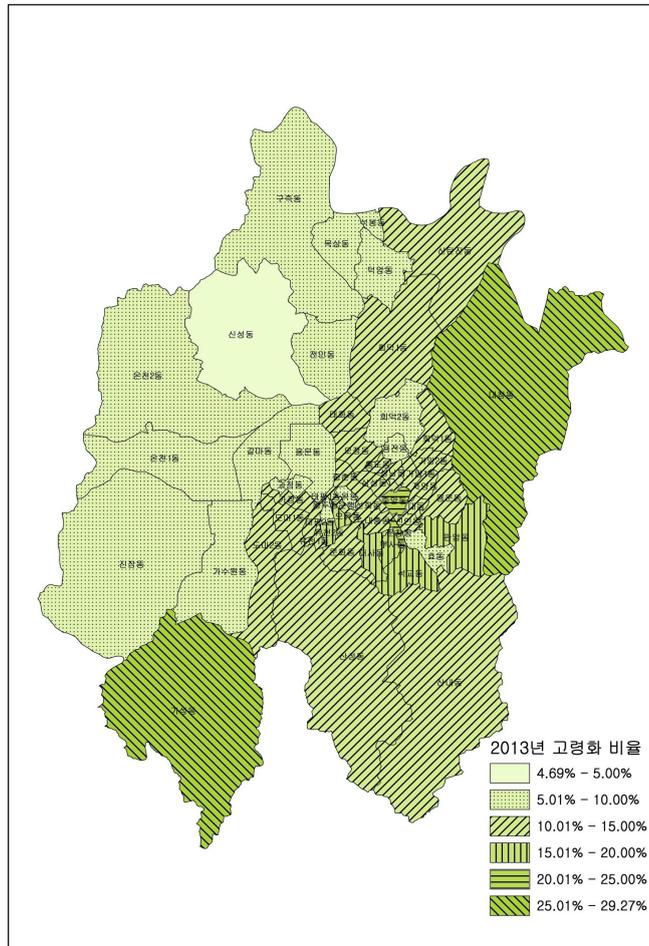


(그림 4-3) 2000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 2013년

2013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은 (그림 4-3)과 같다. 2000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는 고령화의 가속화를 인지할 수 있다. 유성구 신성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고령자비율이 5% 이상이며, 특히 유성구와 서구의 일부 신도심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자 비율이 1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대전시 동남부 지역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북부 지역에서의 고령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 등에 기초할 때, 대전시 전역에서의 고령화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4) 2013년 대전시 동별 고령자비율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시설

1. 고령자 관련 법제 및 계획

(1) 자치법규

대전시 자치법규 중 노인과 관련한 법규는 <표 4-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그리고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있다.

이중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결국 대전광역시에는 복지측면의 몇몇 조례 외에, 고령자나 노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법규로는 서울시 자치법규(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3> 대전시 노인관련 자치법규

종류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조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2010.11.5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조례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 지원조례	2011.11.1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2011.12.30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조례	2012.10.11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2014.8.1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
조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2013.1.11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2) 관련계획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전시는 2014년 10월 향후 4년간 대전의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 고령화 정책,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향후 4년간 대전의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와 함께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사회복지의 전략목표별 7대 영역(일자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보건·의료, 사회적 연대)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대전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을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사이버 의견수렴, 시민보고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하였고, 이날 공청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축사를 통해“앞으로 4년간 우리시 지역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열린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에서는 자치구 활동 동영상 상영과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날 공청회 및 지역대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1월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총괄팀장으로 시 및 재단 관계자, 전문가 및 관련 교수 등 3개 팀 19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2,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시민욕구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민욕구조사를 통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 고령화 정책,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94744(기사입력:2014/10/20 [20:21] 최종편집:©뉴스충청인)

(3) 공공조직

대전시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과'를 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과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소속된 과로서, 노인정책담당, 노인건강담당, 노인시설담당 그리고 저출산보육담당 등이 있다. 각 담당별 주요 업무는 <표 4-4>와 같다.

<표 4-4> 저출산 고령사회과 주요 업무

담 당	주 요 업 무
노인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노인복지관련 법인허가 및 지도 감독 - 시 노인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 -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 -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아업 및 전담기관지정 등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 노인학대예방 운영지원 - 충, 효, 예 및 노인교실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건강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보건예방에 관한 사항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지도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노인시설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시설(무료, 실비, 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매장, 화장,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 - 시립공설화장장 설치 및 운영관리 - 시립공동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
저출산보육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관련 종합계획 수립 -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관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업무 -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리지도 - 아이사랑카드사업 추진

(4) 고령화 대응시책

대전시 고령화 정책을 담당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과에서는 7개의 노인정책 과제, 9개의 노인건강 과제 그리고 14개의 노인시설 과제(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책은 주로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고령화 시대 대전시의 비전이나 정책적 목표 등을 수립 및 제시하는 과제 등이 필요하다.

<표 4-5> 대전시 고령화 대응시책

구 분	제 목
저출산 고령사회과	- 3담당 30개 업무과제(노인복지 주요사업)
노인정책담당 - 7개 업무과제	1. 기초노령연금 지급
	2. 고용과 복지의 노인일자리 사업
	3.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4. 꿈나무지킴이 사업
	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7. 효문화진흥원 건립
노인건강담당 - 9개 업무과제	8.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9.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1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1.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12. 요양보호사 양성추진
	13.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비 지원
	14. 노인건강증진 사업
	15. 장수축하금 지급
	16. 노인건강 업무협약 이행
노인시설담당 - 14개 업무과제	17.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8. 경로당 운영 지원
	19.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사업 추진
	20. 문화예술 소외계층 지원
	2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지원
	24.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입소시설) 지원
	25. 노인복지시설 지원
	26. 명암마을 공원화 사업
	27. 장례지도사 양성 추진
	28. 장사시설 관리·운영
	29.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학술용역 추진
	3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5) 고령자 관련시설 유형 및 분포¹¹⁾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 공동생활가정

대전시 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 시설입소 정원은 277명이며 현원은 97명이고, 종사자수는 총 38명이다. 시설별 현황은 <표 4- 6>과 같다.

<표 4- 6> 대전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시군구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설치일	시설입소 현황		시설현황(㎡)		종사자수
				정원	현원	부지	건물	
총계	-	-	-	277	97	15991	4522	38
동구	공동생활가정	더불어사는마을	2003.05.06	8	7	914	140	3
중구	공동생활가정	주사랑의 집	2005.01.27	7	7	224	126.72	3
중구	공동생활가정	성심의집	2005.10.11	9	8	522	149.5	4
중구	양로	은혜양로원	2014.03.19	125	5	12,061	1,998.79	6
서구	양로	엠마오	2013.7.1	70	14	999	1143	7
유성구	양로	사랑의집	2000.09.09	52	50	1066	855	12
대덕구	공동생활가정	광염이웃사랑의집	2009.07.20	6	6	205.7	109.33	3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대전시 노인요양시설은 총 72개소로 동구와 중구에 16개소, 서구에 21개소, 유성구에 9개소 그리고 대덕구에 10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4- 7>과 같다.

<표 4- 7> 대전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시군구	시설명	시설설치일	입소현황				시설현황(㎡)		종사자수		
			정원	현원			부지	건물	계	남	여
				계	남	여					
노인요양시설 72개소(동구16, 중구16, 서구21, 유성9, 대덕10)			3,945	3,107	746	2,361	167,746	90,583	1,893	231	1,662
동구	금성노인요양원	2006.11.01	118	62	13	49	8,120	2,785.71	39	4	35
동구	대전노인요양원	1997.02.27	100	105	29	76	4,222.00	2,706.52	47	13	34
동구	벨엘너성홈	2013.01.10	12	13	0	13	263.7	369.69	10	0	10
동구	산내노인종합센터	2010.04.12	20	14	0	14	365	217	8	1	7
동구	선우노인복지센터	2010.03.01	13	14	0	14	2754	2029	11	0	11
동구	온누리노인요양원	2008.10.09	72	62	10	52	1872	1763	39	4	35
동구	임마누엘실버홈	2004.11.09	78	69	17	52	1260	2209	38	8	30
동구	플래티늄	2008.11.06	100	100	23	77	978	1677	51	4	47
동구	한우리요양센터	2011.01.05	74	58	13	45	719	406.34	35	4	31
동구	헤드림실버요양원	2012.04.17	23	24	5	19	550.03	550.03	15	1	14
동구	효원노인요양원	2005.06.22	32	32	3	29	444	1099	20	2	18

11) 대전시 홈페이지 자료(<http://www.daejeon.go.kr/>)

동구	행복드림노인전문요양원	2013.07.03	157	114	30	84	636	3,726.449	68	4	64
동구	맑은요양원	2013.08.23	87	43	12	31	521.5	2,284.33	37	3	34
동구	가원 노인전문요양원	2014.01.21	26	19	3	16	348.9	614.4	14	1	13
동구	나날요양원	2014.05.02	29	9	2	7	1,578.9	1,636.73	9	1	8
동구	다복노인요양원	2014.04.04	18	7	0	7	377.89	438.32	7	2	5
중구	실버랜드	2002.01.23	112	85	13	72	6198	2672.76	51	7	44
중구	선한이웃노인요양원	2011.04.01	38	19	6	13	1341	919.12	14	2	12
중구	은혜노인요양원(휴지2013.10.01~2014.09.30)	2010.03.01	11	0	0	0	12,061	279.72	2	2	0
중구	좋은마을	2007.03.13	72	68	22	46	2950	1526.64	40	6	34
중구	한사랑노인전문요양원	2008.03.13	43	29	5	24	540.02	1,017.30	16	1	15
중구	새출발죽복의집 노인요양원	2008.07.01	29	27	5	22	513	786.17	16	2	14
중구	푸른노인요양원	2008.09.03	49	48	4	44	1129.6	1170.28	32	2	30
중구	은빛소규모노인종합센터	2009.02.20	16	8	1	7	487	280.25	6	1	5
중구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	2009.06.11	108	86	22	64	2388.5	2861.97	44	7	37
중구	대전보건대학교 이안요양원	2010.03.01	29	27	3	24	2388.5	1100.14	21	1	20
중구	남대전요양원	2010.07.23	63	54	15	39	889.90	1629.94	30	1	29
중구	대전성모케어센터	2012.01.20	42	40	13	27	707.1	1478.85	25	2	23
중구	법골요양원(휴지2013.12.23~2014.03.31)	2012,09,28	21	0	0	0	310	449.26	1	1	0
중구	세종노인요양원	2012.11.05	49	49	14	35	690.2	1267.04	28	2	26
중구	죽복마을	2013.03.01	119	19	4	15	12,061	2,827.33	12	1	11
중구	늘사랑요양원	2013.04.24	49	45	9	36	763.8	335.76	28	2	26
서구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	2004.03.12	84	65	12	53	8219	2028	45	10	35
서구	연광실버타운	2004.02.24	80	33	8	25	10381	1,966.67	26	5	21
서구	대전은혜의 집	2012.06.22	92	51	8	43	8819	1547	34	4	30
서구	원광수양원	2012.06.22	50	40	6	34	8819	1710	28	3	25
서구	빛너울노인요양센터	2008.01.21	44	42	10	32	995.7	1036	25	3	22
서구	인제노인요양원	2010.01.25	22	22	3	19	449.8	516.04	12	0	12
서구	자혜은빛마을	2004.07.30	82	40	10	30	3761	2418.56	28	4	24
서구	믿음의집	2006.10.02	28	26	6	20	2100	1050	14	3	11
서구	엠마오노인종합센터	2010.06.15	19	19	4	15	428.5	454.02	11	2	9
서구	불빛노인요양원	2009.06.08	26	18	2	16	303.5	623.02	14	1	13
서구	우리요양원	2009.08.27	25	21	4	17	1524.7	2379.25	19	1	18
서구	유엔아이너서홀	2010.01.05	29	28	5	23	408.4	656.97	18	2	16
서구	플래티넘서부 노인요양원	2010.09.15	39	33	10	23	1581.4	1141.02	18	2	16
서구	관저요양원	2011.01.18	79	62	15	47	1879.7	1865.6	28	2	26
서구	인혜요양원	2011.11.25	29	29	5	24	568.4	712.33	17	2	15
서구	성애노인요양원	1997.11.27	69	68	20	48	7237	1929	43	3	40
서구	이삭요양원	2012.02.03	49	26	8	18	728.9	1351.9	20	2	18
서구	실버누리	2012.08.10	76	60	19	41	997.7	1,895.22	35	3	32
서구	대전요양원	2013.4.30	95	69	16	53	553.7	896.98	41	5	36
서구	부모사랑요양원	2013.11.13	36	30	9	21	489.9	878.64	20	4	16
서구	도마요양원	2013.10.22	29	27	8	19	1,122.30	1,099.20	10	1	9
유성구	선우행복마을	2008.02.19	65	68	14	54	5691	1544	39	11	28
유성구	선우치매센터	1999.12.06	129	128	39	89	5691	3049	68	21	47
유성구	에덴실버타운	2010.02.09	25	19	2	17	1172	602	13	1	12
유성구	나이팅게일 실버홀 1호점	2009.12.17	47	40	11	29	475	526	27	2	25
유성구	은빛노인복지센터	2010.03.01	12	10	10	10	408	277	11		11
유성구	행복한노인요양원	2010.03.01	48	46	2	44	495	590.14	26	1	25
유성구	대전보훈요양원	2012.9.28	204	203	126	77	7370	7377.6	125	16	109
유성구	유성사랑마루	2012.05.23	47	46	5	41	245.9	1116	27	3	24
유성구	플래티넘 유성	2014.06.02	27	4	4	1852.7	1062.09	6	1	5	
대덕구	다비다의집	1998.11.17	141	117	24	93	3828	4300.63	61	12	49
대덕구	펠그림복지원	2008.07.16	29	29	1	28	849.51	645.2	18	1	17
대덕구	우리쉼터노인요양원	2009.05.29	29	22	4	18	664.07	775.75	14	1	13
대덕구	대덕노인요양원	2009.11.30	29	22	1	21	603.9	488.66	14	1	13
대덕구	성덕요양원	2010.03.17	44	19	3	16	550.1	1079.88	11	1	10
대덕구	한일노인사랑	2010.11.11	20	20	0	20	2095	973.5	12	0	12
대덕구	동춘요양원	2011.05.11	55	55	14	41	855.5	1177.26	36	2	34
대덕구	해피엔젤요양센터	2011.12.22	26	26	5	21	855.3	620.6	17	1	16
대덕구	대전사랑마루	2012.01.12	28	28	5	23	1030.1	657.53	17	1	16
대덕구	예사랑 실버케어	2012.03.28	49	47	6	41	2795	1080.9	31	1	30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대전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총 36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구에 10개소, 중구에 6개소, 서구에 13개소, 유성구 2개소 그리고 대덕구에 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4-8>과 같다.

<표 4-8>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시 설 명	시설설치일	입소현황				시설현황(㎡)		종사자수		
			정원	현원			부지	건물	계	남	여
				계	남	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개소(동구10, 중구6, 서구13, 유성2, 대덕5)			302	259	24	235	21,228	8,082	191	25	166
동구	보급자리효2요양원	2011.07.29	8	7	0	7	659	176.85	4	0	4
동구	보급자리효요양원	2010.04.22	9	8	1	7	659	197.36	6	0	6
동구	새빛사랑의집	2010.03.01	9	8	0	8	992	199	8	3	5
동구	에덴노인요양원	2004.06.09	9	9	1	8	2740	272	6	1	5
동구	에스시니어	2009.11.27	9	9	1	8	609	193.96	6	0	6
동구	평화실버하우스	2010.03.01	9	8	0	8	449	232	4	0	4
동구	한가족노인요양원	2014.02.03	9	9	1	8	733	230.19	11	1	10
동구	한울노인요양원	2009.09.23	9	9	0	9	299	1169	5	0	5
동구	더불어사는집	2008.09.24	6	5	0	5	660	129	5	1	4
동구	가정실버홈	2012.02.09	9	7	3	4	409	192.41	6	2	4
중구	보아스의 집	2010.08.26	9	9	0	9	409.6	188.5	5	1	4
중구	보문현대실버홈	2009.07.13	9	5	1	4	607	371.15	4	1	3
중구	대전남부비전복지타운	2009.11.06	9	8	0	8	651	255.45	7	0	7
중구	사랑의집	2010.08.23	9	9	2	7	485	196.4	6	2	4
중구	늘기쁨실버홈	2011.05.09	6	6	0	6	244.6	142.08	4	0	4
중구	신한우리홈케어	2013.03.25	9	9	2	7	402	234.96	7	0	7
서구	가원	2005.09.28	9	0	0	0	387.5	195.3	1	0	1
서구	효성의집(I)	2010.09.15	9	9	0	9	410	198	6	2	4
서구	효성의집(II)	2010.09.15	9	9	0	9	264	190	5	1	4
서구	어머님의집	2007.08.01	9	9	0	9	311	195.42	6	1	5
서구	열매노인요양센터(휴지2013.7.17-2014.7.16)	2008.10.02	9	0	0	0	246.6	193.62	0	0	0
서구	섬김과나눔의집	2009.01.06	6	3	0	3	501	131.5	3	1	2
서구	사랑가득한집	2011.06.01	9	9	4	5	544	209	6	2	4
서구	편안세상	2010.11.15	8	8	0	8	265	165.9	6	1	5
서구	정다운복지센터	2010.11.24	7	7	0	7	225	146	4	1	3
서구	어머님의집 2	2011.01.04	6	6	0	6	320	123.9	5	0	5
서구	예사랑노인복지센터(휴지2013.7.1-2014.12.31)	2012.02.06	8	0	0	0	273	180	2	0	2
서구	한솔요양원	2012.02.22	9	9	1	8	789	200.81	6	0	6
서구	싱글병글복지센터	2013.07.10	8	6	0	6	306.4	197.78	4	0	4
유성구	노인요양시설급촌공동생활가정	2010.03.01	9	9	3	6	1082.9	237.75	8	-	8
유성구	한울타리요양센터	2012.02.02	9	9	2	7	547	193.8	8	1	7
대덕구	사랑한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08.09.10	8	8	2	6	718.5	181.59	6	1	5
대덕구	믿음한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08.09.10	7	7	0	7	718.5	156.01	5	0	5
대덕구	행복한우리집	2009.11.04	9	9	0	9	497	193.6	5	1	4
대덕구	만민의 집	2009.11.04	8	8	0	8	688	193	6	1	5
대덕구	한밭요양원	2011.04.12	9	9	0	9	1125	219	5	0	5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대전시에는 6개의 노인복지관(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노인복지관 1일 이용인원은 3,490명이고 종사자수는 84명이다. 구체적인 시설현황은 <표 4-9>와 같다.

<표 4-9>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

시군구	명 칭	등록 회원수	1일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현황(㎡)	
				계	남	여	부지	건물
합 계	6개소	27,155	3,490	84	34	50	18,608	15,199
동 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3,321	450	14	4	10	2,598	2,891.32
동 구	동구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3,149	540	14	5	9	3,467	2,546.78
대전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4,919	1,100	15	7	8	4,371	4,318.71
서 구	서구 노인복지관	6,936	600	15	5	10	1,254.60	2,018.72
유성구	유성구 노인복지관	4,605	300	11	6	5	4,375	1,557.34
대덕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4,225	500	15	7	8	2,542	1,866.26

□ 노인휴양소

대전시 중구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이란 노인휴양소가 위치하고 있다. 1일 이용인원은 579명이며, 종사자수는 17명, 건물면적은 6,796㎡이다.

<표 4-10> 대전시 노인휴양소 현황

시군구	명 칭	1일 이용 인원	종사자수			시설소재지	시설현황(㎡)	
			계	남	여		부지	건물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579	17	13	4	대전중구뿌리공원로47(안영동)	56,365	6,796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전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동구에 3개소, 중구에 7개소, 서구에 3개소, 유성구에 2개소 그리고 대덕구에 2개소 등 총 1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 4-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용현원은 총 1,304명이며 종사자수는 총 146명이다.

<표 4-11> 대전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시군구	시 설 명	이용 현원	종사 자수	시설 설치일	설치주체	운영주체
동구	금성노인복지센터	84	3	2000.03.22	사회복지법인	금성복지재단
동구	선우노인복지센터	106	3	1994.03.28	사회복지법인	선우복지재단
동구	대전재가노인복지센터	40	4	2010.02.02	개인	
중구	대전노인복지센터	100	3	2002.03.08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중구	이웃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0	4	2008.06.04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중구	셋별재가노인지원센터	83	3	2008.01.0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중구	기아대책노인복지센터	82	22	2005.06.07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중구	한밭노인복지센터	80	4	2008.01.03	월드복음선교협의회	손기일
중구	남대전노인복지센터	80	4	2007.05.28	개인	
중구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73	79	2011.11.01	사회복지법인	해빛복지재단
서구	대전은혜노인복지센터	83	3	2012.06.12	법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서구	서구노인복지관 재가지원센터	87	3	1999.05.06	법인	(사복) 대한불교조계종
서구	충우재가노인지원센터	0	0	2012.10.16	법인	사회복지법인 푸른하늘
유성구	한빛노인복지센터	70	2	2006.12.27	법인	(사단)엠마오호스피스
유성구	유성노인복지센터	81	3	2003.01.07	법인	(사복)선우복지재단
대덕구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81	3	1999.06.15	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덕구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	84	3	2006.03.03	사회복지법인	대덕사랑교육문화복지재단
합계		1,304	146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분포하고 있다.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5명이며 종사자수는 8명이다.

<표 4-12> 대전시 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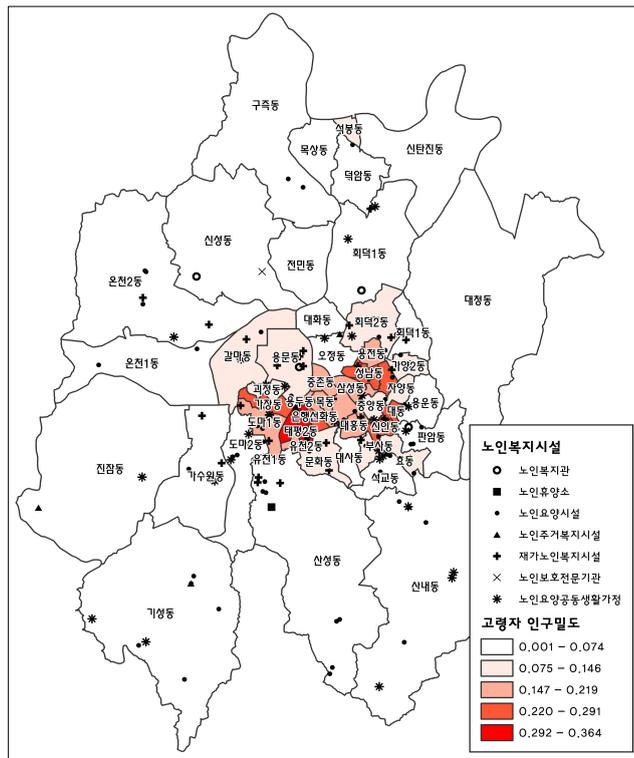
명 칭	대표자	1일평균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 설 소재지	지정일 (개소일)	설치 주체	지정기관 (운영법인)
			정원	현 원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종순	15명	8	8	유성구 대 덕대로 598	2004.9.20	법인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 복지회

⑥ 노인인구분포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대전시 동별 고령자와 밀도와 전술한 대전시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년보호전문기관)을 공간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4-5)와 같다.

우선 대전시 고령자밀도는 성남동 등 원도심 지역과 서구 가장동 등 대전시 중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 외곽지역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대전시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분포와 특별한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 즉 고령자 시설은 고령자 분포를 고려하여, 연관성을 분석한 뒤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그림 4-5) 대전시 동별 고령자밀도와 노인복지시설 분포

제3절 고령자 인식

1. 조사의 개요

□ 조사명 및 목적

대전시에서는 2011년 이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사회조사¹²⁾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및 항목

본 조사의 대상은 5,000여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양력 1998년 8월 31일, 음력 1998년 7월 10일 이전 출생자)이며, 본 연구에서는 표본 중 65세 이상 고령자 720명과 55세~64세 준고령자 712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항목은 2013년 기준 가족, 주거·교통, 교육, 노동, 사회복지, 공동체, 소득·소비 등 7개 항목이다.

□ 조사시기 및 공표

조사원교육은 2013년 8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9월 1일 ~ 9월 30일간 실시하였다. 2013년 12월 조사결과가 공표되었다.

2. 일반적 현황

분석대상인 고령자 720명과 준고령자 71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3>과 같다.

고령자의 경우 남성은 전체의 15.6% 그리고 여성은 84.4%로 여성의 구성비율이

12)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이다.

높고, 준고령자의 경우도 남성이 10.5%, 여성이 89.5%로 여성이 높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경우 60대가 31.5%, 70대가 48.8%, 80대가 16.5% 그리고 90대 이상은 3.2%이다. 준고령자는 50대가 58.3%이고 60대는 41.7%이다.

고령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0.3%, 배우자 있음이 70.3%, 사별이 29.3% 그리고 이혼은 0.1%이며, 준고령자의 경우 미혼이 0.3%, 배우자 있음이 92.8%, 사별이 5.6% 그리고 이혼이 1.3%이다.

<표 4-13> 조사대상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합계	일반적 특성			
성 별	고 령 자	합계	남성		여성	
		720	112		608	
		(100%)	(15.6%)		(84.4%)	
	준고 령자	712	75		637	
		(100%)	(10.5%)		(89.5%)	
연 령	고 령 자	합계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720	227	351	119	23
		(100%)	(31.5%)	(48.8%)	(16.5%)	(3.2%)
	준고 령자	합계	50대	60대		
	712	415	297			
	(100%)	(58.3%)	(41.7%)			
혼 인 상 태	고 령 자	합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720	2	506	211	1
		(100%)	(0.3%)	(70.3%)	(29.3%)	(0.1%)
	준고 령자	712	2	661	40	9
	(100%)	(0.3%)	(92.8%)	(5.6%)	(1.3%)	

3. 대전시 고령자 인식 특성

□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대상 고령자는 본인의 주거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이 10.0% 그리고 약간 만족이 51.9%로서 약 6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은 4.5%로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55세~64세의 준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약간 만족이 54.2%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72	374	242	30	2	720	6.314	4	0.177
	구분의%	10.0%	51.9%	33.6%	4.2%	0.3%	100.0%			
준고령자	빈도	84	386	223	19	0	712			
	구분의%	11.8%	54.2%	31.3%	2.7%	0.0%	100.0%			
전체	빈도	156	760	465	49	2	1,432			
	구분의%	10.9%	53.1%	32.5%	3.4%	0.1%	100.0%			

□ 일상 교통수단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은 도보(걸어서)가 전체의 57.5%로 절대적으로 높고, 다음은 버스로서 30.0%를 차지한다. 자가용은 8.9%이며, 자전거와 지하철은 1%대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고령자를 위한 도시환경으로 보행환경의 중요성 및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준고령자는 자가용의 점유비중이 18.5%로 그리고 버스의 점유비중이 39.7%로 고령자에 비해 약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도보 점유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일상적인 교통수단 점유비중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하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구분		도보	자전거	자가용	버스	지하철	택시	기타	전체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414	11	64	216	8	7	0	720	71.538	6	0.000
	구분의%	57.5%	1.5%	8.9%	30.0%	1.1%	1.0%	0.0%	100.0%			
준고령자	빈도	260	15	132	283	13	7	2	712			
	구분의%	36.5%	2.1%	18.5%	39.7%	1.8%	1.0%	0.3%	100.0%			
전체	빈도	674	26	196	499	21	14	2	1,432			
	구분의%	47.1%	1.8%	13.7%	34.8%	1.5%	1.0%	0.1%	100.0%			

□ 노인 어려움

고령자들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42.1%로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 다음은 고독의 문제로 20.7% 그리고 건강문제는 15.1%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면, 외로움(20.7%) 및 사회적 소외(7.2%)를 해소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등과 같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준고령자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소외가 11.1%로 고령자에 비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응답은 10.1%로 적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경제적 문제	외로움	자녀와 갈등	건강 문제	사회적 소외	소일거리 부족	기타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고령	빈도	303	149	29	109	52	77	1	720	15.763	6	0.015
	구분 의%	42.1%	20.7%	4.0%	15.1%	7.2%	10.7%	0.1%	100.0%			
준고령자	빈도	298	159	36	72	79	68	0	712			
	구분 의%	41.9%	22.3%	5.1%	10.1%	11.1%	9.6%	0.0%	100.0%			
전체	빈도	601	308	65	181	131	145	1	1,432			
	구분 의%	42.0%	21.5%	4.5%	12.6%	9.1%	10.1%	0.1%	100.0%			

□ 가족간 소통

고령자의 72.4%는 가족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8%이다. 준고령자도 가족간 소통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가족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잘 이루어짐	약간 이루어짐	보통	별로이루어지지않음	전혀이루어지지않음	해당 사항 없음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고령	빈도	146	375	167	25	2	5	720	8.308	5	0.140

	구분의 %	20.3%	52.1%	23.2%	3.5%	0.3%	0.7%	100.0%			
준고령자	빈도	178	354	159	17	3	1	712			
	구분의 %	25.0%	49.7%	22.3%	2.4%	0.4%	0.1%	100.0%			
전체	빈도	324	729	326	42	5	6	1,432			
	구분의 %	22.6%	50.9%	22.8%	2.9%	0.3%	0.4%	100.0%			

□ 대전시민 자랑

귀하가 대전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고령자의 60.8%가 매우 또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상대적으로 적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4.9%이다.

한편 준고령자도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에 대해 약간 그렇다가 49.0%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볼 때, 고령자와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고령	빈도	118	320	251	29	2	720	7.327	4	0.120
	구분의 %	16.4%	44.4%	34.9%	4.0%	0.3%	100.0%			
준고령자	빈도	126	349	209	28	0	712			
	구분의 %	17.7%	49.0%	29.4%	3.9%	0.0%	100.0%			
전체	빈도	244	669	460	57	2	1,432			
	구분의 %	17.0%	46.7%	32.1%	4.0%	0.1%	100.0%			

□ 주변 도움 여부

고령자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78.3%는 있다고 응답하였고, 21.7%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준고령자의 경우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85.4%로 고령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564	156	720	12.008	1	0.001
	구분의 %	78.3%	21.7%	100.0%			
준 고 령자	빈도	608	104	712			
	구분의 %	85.4%	14.6%	100.0%			
전체	빈도	1,172	260	1,432			
	구분의 %	81.8%	18.2%	100.0%			

□ 대화상대 여부

고령자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상대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78.9% 그리고 없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나, 앞선 질문(아플 때 도움 여부)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준고령자의 경우, 앞선 질문과 유사하게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응답이 고령자 보다 약 10% 높은 89.0%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두 집단간에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준고령자 집단이 고령자 집단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568	152	720	27.389	1	0.000
	구분의 %	78.9%	21.1%	100.0%			
준 고 령자	빈도	634	78	712			
	구분의 %	89.0%	11.0%	100.0%			
전체	빈도	1,202	230	1,432			
	구분의 %	83.9%	16.1%	100.0%			

□ 소득 만족도

고령자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적인 응답은 전체의 4.2%이며, 보통이 17.6% 그리고 약간 또는 매우 불만족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소득 있는 경우 불만족 비중이 높았다. 한편 소득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1.1%이다.

이러한 응답은 앞선 조사, '고령자의 어려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준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고령자에 비해 약 10% 적은 61.4%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24.6%로 고령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집단과 준고령자 집단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소득 없음	전체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2	28	127	42	9	512	720	18.931	5	0.002
	구 분 의 %	0.3%	3.9%	17.6%	5.8%	1.3%	71.1%	100.0%			
준고령자	빈도	9	30	175	50	11	437	712			
	구 분 의 %	1.3%	4.2%	24.6%	7.0%	1.5%	61.4%	100.0%			
전체	빈도	11	58	302	92	20	949	1,432			
	구 분 의 %	0.8%	4.1%	21.1%	6.4%	1.4%	66.3%	100.0%			

□ 소비 만족도

고령자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 62.2%로 절대적인 점유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1.1%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간만족이라는 응답은 9.7%이다. 한편 준고령자의 경우 소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60.3%, 약간 불만족이 20.4%로 고령자와 유사하나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고령자에 비해 약 5%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집단과 준고령자 집단에 있어서 소비수준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카 이 제공	자 유 도	유 의 확률
고령	빈도	13	70	448	152	37	720	13,841	4	0.008
	구분의 %	1.8%	9.7%	62.2%	21.1%	5.1%	100.0%			
준고 령자	빈도	19	101	429	145	18	712			
	구분의 %	2.7%	14.2%	60.3%	20.4%	2.5%	100.0%			
전체	빈도	32	171	877	297	55	1,432			
	구분의 %	2.2%	11.9%	61.2%	20.7%	3.8%	100.0%			

□ 생활비 마련방법

고령자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자녀 또는 친척 도움이 전체의 50.6%로 가장 높고,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응답은 39.7%로 다음 순위이다.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보조 등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귀하는 주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유효	본인 및 배우자 마련	286	39.7	39.7	39.7
	자녀 또는 친척 도움	364	50.6	50.6	90.3
	정부 및 사회단체(정부보조 등)	39	5.4	5.4	95.7
	기타	31	4.3	4.3	100.0
	합계	720	100.0	100.0	

□ 시간 보내는 장소

고령자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본인이나 가족 등 '집'으로 전체 응답의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경로당 등이 27.1%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

은 교회 등 종교기관이 5.0%, 근린공원 등은 3.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고령자 시설배치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
유효	집(본인, 가족, 이웃집 등 포함)	404	56.1	56.1	56.1
	경로당, 노인(종합) 복지관, (종합) 사회복지관	195	27.1	27.1	83.2
	교회, 절, 성당 등 종교기관	36	5.0	5.0	88.2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관, 사회문화교실 등	17	2.4	2.4	90.6
	근린공원, 산 등	28	3.9	3.9	94.4
	동호회 사무실 등	2	0.3	0.3	94.7
	기타	34	4.7	4.7	99.4
	직장(일터)	4	0.6	0.6	100.0
	합계	720	100.0	100.0	

□ 경제사회적 위치

고령자들은 본인의 경제·사회적 위치에 대해,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하상이라는 응답이 32.6%를 차지한다. 본인이 상상이나 상하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고령자는 2%에 불과하다.

한편 준고령자는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속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계층에서 중하계층까지는 고령자에 비해 점유비중이 높고, 반면 하상계층과 하계층의 점유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령자 집단과 준고령자 집단은 본인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해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하의 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전체	카이 제곱	자유 도	유의 확률
고령	빈도	2	12	88	335	235	48	720	31.267	5	0.000
	구분 의%	0.3%	1.7%	12.2%	46.5%	32.6%	6.7%	100.0%			
준고 령자	빈도	1	19	123	378	170	21	712			
	구분 의%	0.1%	2.7%	17.3%	53.1%	23.9%	2.9%	100.0%			
전체	빈도	3	31	211	713	405	69	1,432			
	구분 의%	0.2%	2.2%	14.7%	49.8%	28.3%	4.8%	100.0%			

제4절 고령화 사회의 과제

대전시 고령화의 여건 및 진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다.

□ 고령화에 대한 대전시 대응방안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음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대전시의 경우 주로 복지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일부 자치조례에 기초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시 차원의 전반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 계획적 대응을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고령화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시대에 어떠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접근은 주로 단편적 접근으로 복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고령화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도시의 종합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도시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목표 및 기본적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실증적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분포 및 증가추이, 관련시설 및 제도적 정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제 5 장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

제1절 계획적 대응 방안

제2절 법제도적 정비 방안

제3절 고령자 시설 인접성 분석

제5장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

제1절 계획적 대응 방안

1. 『대전도시기본계획』 보완

□ 도시의 핵심이슈로 설정되어야 함

고령화에 대비하여, 도시전반에 걸친 대응전략 및 실천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주로 복지측면에서 접근하는 고령화 대응전략의 수립은 효과가 단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 전반에 걸친 고령화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고령화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된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령화에 대한 도시차원의 접근방식을 설정할 경우,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대전광역시, 2012)』에서는 ①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 ② 경쟁력 있는 국제과학도시 ③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④ 활력이 넘치는 도시 ⑤ 대중교통 중심도시 ⑥ 건강한 환경도시 등 6가지를 핵심이슈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핵심이슈별로 목표체계를 설정하고 주요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이들 핵심이슈에서 고령화는 제외된 상태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도시의 당면문제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제 핵심이슈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편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이슈는 ‘건강한 환경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강한 환경도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체계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도시 그리고 건강 관련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 등 3가지로 체계화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의 한 전략으로서 ‘노인복

지인프라 확충과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이 제시되어 있다.

즉 고령화가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핵심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핵심이슈가 아니더라도 목표의 하나로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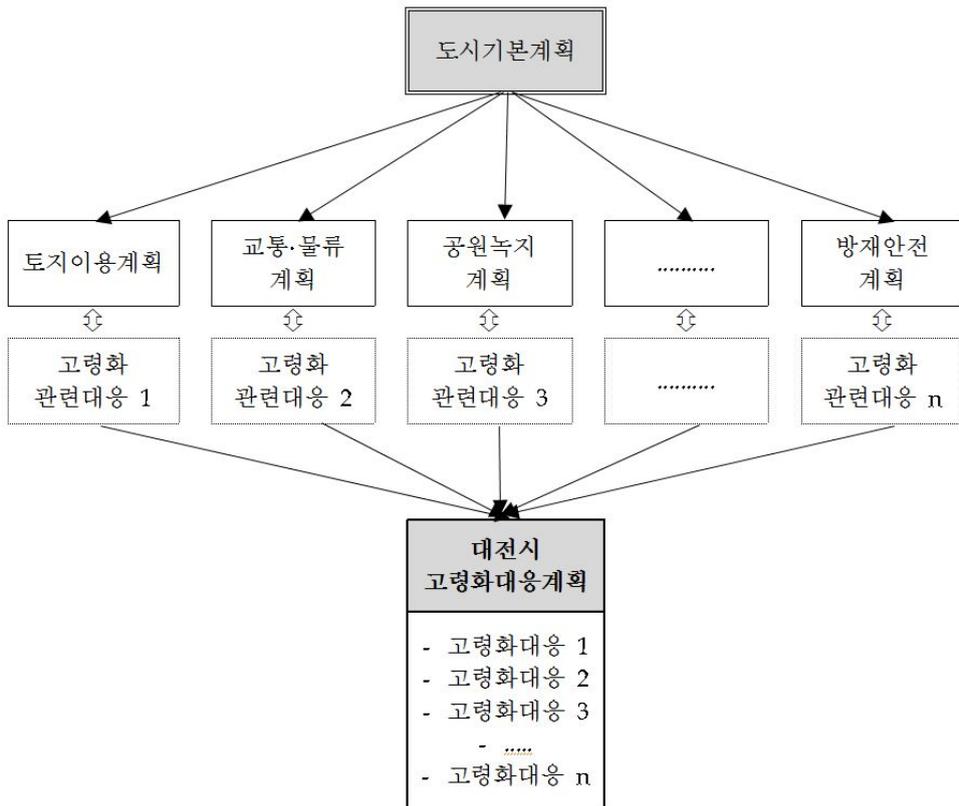
<표 5- 1> 대전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 및 목표체계

핵심이슈	목표체계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	충청광역권과 상생·발전하는 장기발전전략
	기능 및 역할배분을 통한 특화기능 육성
	광역 인프라의 공동활용
경쟁력 있는 국제과학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제고
	국제적인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
	교육수준 향상 및 교육인프라 구축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중부권의 광역 문화거점으로 육성
	창조적 문화 향유 여건 조성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
활력이 넘치는 도시	원도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노후산업단지 재생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중교통 수요 증대
	교통수요 관리
	광역교통 효율화
	역세권 활성화
건강한 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도시
	건강 관련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

□ 부문별 고령화 대응전략(계획) 수립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경제·산업계획,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 방재·안전계획 그리고 재정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가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문별 계획에서 고령자 또는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대전시 고령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1) 대전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에서 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2.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앞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다루는 정책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실천적 계획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현실적 도시계획 수법으로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서 고령화 관련한 용도지구 지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¹³⁾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법적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등이 있다.¹⁴⁾

한편 국토계획법 제37조 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¹⁵⁾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양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다.(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 ; 기타 용도지구의 지정)

따라서 고령자의 급증에 대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용도지구로서 고령자지구를 정하고, 고령자를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자 시설의 적정 배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고령자 관련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좀 더 나아

13)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2014년 10월 20일 기준)

15)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 기준은 ①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②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 ③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가, 고령자를 위한 용도지구는 고령자 등 노약자를 위한 지구 등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술한 가칭 고령자 지구 외에 법적계획으로서, 고령자 관련시설이 많이 분포하거나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고령자의 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광폭의 횡단보도, 횡단보도시간 연장, 평면 이동(육교 및 지하도 등 제한), 수직이동 장비 구축 등과 같은 시설적 보완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령자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보행우선구역’ 그리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등과 연동하여 지정 및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둔산동(2010년), 서대전 네거리(2012년) 그리고 중앙로역(2013년) 등 3개소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대전광역시, 2014년)」에서는 <표 5- 2>와 같은 보행우선구역 사업대상지를 제안하고 있다.¹⁶⁾

<표 5- 2> 대전시 보행우선구역 사업대상지

구분	자치구	사업지구	지구유형	사업기간
1	동구	자양동 동광초등학교 일원	주거지역(어린이통학로지구)	2017
2	중구	유천1동 주민센터 일원	주거지역(생활안전지구)	2015
3	서구	관저동 먹자골목 일원	상업지역(보행유발지구)	2017
4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일원	상업지역(보행유발지구)	2016
5	유성구	궁동 로데오거리 일원(1단계)	상업지역(대학로지구)	2014
6		궁동 로데오거리 일원(2단계)	상업지역(대학로지구)	2015
7		어은동 카이스트 일원	상업지역(대학로지구)	2018
8	대덕구	중리동 중리근린공원 일원	주거지역(생활안전지구)	2016
9		오정동 화정초등학교 일원	보호구역(교통약자지구)	2018

출처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4, 대전광역시), p.157

1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4-2018)(대전광역시, 2014)

3. 고령친화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지속적 수행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는 이제 우리사회의 선택적 여건이 아니라 필수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앙’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고령화를 얼마나 우려의 시각에서 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농촌 등에서 고령화의 심각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해결의 의지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국가차원의 그리고 부문별로는 복지차원의 문제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과거 또는 최근, 도시계획은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구온난화 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등을 저감하고 녹색의 사회를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2009년 7월)’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 등이 중요시됨에 따라 ‘여성친화적 도시계획¹⁷⁾’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나 계획수립이 얼마나 우리의 당면 도시문제를 해결하였는지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다시 돌아가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끊임없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령화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도시계획 수립지침』 또는 『위약자 도시계획 수립지침』은 그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7) 대전시 서구에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2009. 7. 15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공간적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 '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필요
-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도시정책의 실현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지침의 체계 : 제4장 제15절

- 총 칙 : 지침제정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
- 광역도시계획 : 적용기준, 온실가스 감축 요인분석·전략 수립, 부분별 감축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전략 수립
- 도시관리계획 : 적용기준, 배출현황 및 장래예측, 부분별 감축대응계획

□ 지침의 주요내용

-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래예측,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 종합분석,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을 제시
 - 생활권단위 공간구조계획에서 생활·편의시설과 교통계획 연계한 보행,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 체계적인 빗물처리계획 등 기반시설계획을 제시
 -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

제2절 법제도적 정비 방안

1.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고령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과 같은 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대전시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고령친화도시’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는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있다.

<표 5- 3>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조례의 사례

지자체	조례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표 5- 4>와 같다.

서울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령친화도시를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보며,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가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노인정책센터와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5- 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 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

의 수립)	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p>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p>
제2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p>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한다.</p>
제30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p>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과 같은 서울시 조례에 기초하여 대전시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 목적 : 조례의 목적
- 정의 : 고령친화, 고령친화도시 등에 대한 정의
- 대전광역시(또는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 고령자 실태조사 : 정기적인 고령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제도 등에 관한 내용
-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 고령사회 대책 등의 중요사항 심의 위원회

2. 가칭 『대전시 고령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현재 우리나라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앞서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방향 제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분야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이어야 한다. 즉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1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 방향에 따라,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시키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5-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부문별 계획 측면에서 계획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례로는 서울시 사례가 적절하다. 서울시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령화 관련 조례와 기본계획 등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수립한 계획으로는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 노인 100만 시대, 100세 도시 서울(2010)」와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2011)」 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도시 평가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대전시에서도 서울시의 계획 등을 참조하여, 「대전시 고령화 대응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서 대전시의 고령친화정도를 파악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고령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고령영향평가제도’¹⁹⁾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도시 평가제도입 등에 관한 내용은 3장 2절 관련제도 고찰내용 참조

19) 고령자와 관련한 시설의 경우, 고령자의 특성(신체적, 정신적)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고령자 시설 인접성 분석

1. 고령자 의식조사의 개요

고령화시대 대전시의 역할,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고령자시설의 인접성 등 고령자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전시 중구 서대전공원 인근을 방문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조사는 일정교육을 받은 조사자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27일간 총 5일이며, 총 조사매수는 90매이다.

조사대상 고령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 5>와 같다.

조사대상의 62.2%는 남자이며, 37.8%는 여자이다. 연령대는 65-69세가 전체의 41.1%, 70-74세가 26.7%, 75-79세가 18.9% 그리고 80세 이상의 연령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졸업이 21.1%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은 15.6%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또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46.7%로 절반 정도이며, 매우 또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14.4%이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8.9%이다. 동거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부가 함께 사는 형태가 전체의 65.6%이고, 16.7%는 혼자 그리고 '혼자+자녀'의 동거형태는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자녀'의 동거형태는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비중을 보였다.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전할 수 있다는 응답이 56.7%로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조금 높았으며, 운전이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이 있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타났다. 즉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차량을 보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평균 소득은 100-179만원대가 전체의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70만원 미만대가 26.7%, 70-99만원대는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0만원대 이상도 16.7%로 나타났다.

<표 5-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합계	남자			여자	
	90	56			34	
	(100.0)	(62.2)			(37.8)	
나이	합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90	37	24	17	12	
	(100.0)	(41.1)	(26.7)	(18.9)	(13.3)	
학력	합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90	2	13	19	42	14
	(100.0)	(2.2)	(14.4)	(21.1)	(46.7)	(15.6)
건강상태	합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90	8	34	35	12	1
	(100.0)	(8.9)	(37.8)	(38.9)	(13.3)	(1.1)
동거인	합계	혼자	부부	혼자+자녀	부부+자녀	기타
	90	15	59	10	6	-
	(100.0)	(16.7)	(65.6)	(11.1)	(6.7)	-
운전여부	합계	어르신 또는 배우자 운전가능			운전 불가능	
	90	51			39	
	(100.0)	(56.7)			(43.3)	
소유차량	합계	차량 소유			없음	
	51	43			8	
	(100.0)	(84.3)			(15.7)	
평균소득	합계	70만원미만	70-99만원	100-179만원	180-259만원	260만원이상
	90	24	16	27	8	15
	(100.0)	(26.7)	(17.8)	(30.0)	(8.9)	(16.7)

2. 일반적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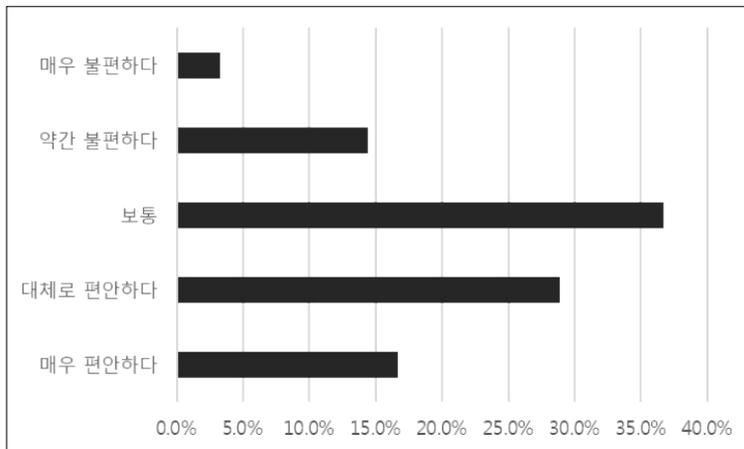
□ 대전시 고령자 생활여건

조사대상 고령자에게 대전시가 생활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보통 이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매우 편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5.6% 그리고 매우 또는 약간 불편하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대전시가 생활하기에 편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어르신께서 생활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단위 : 명, (%))]

합계	매우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보통	대체로 편안하다	매우 편안하다
90	3	13	33	26	15
(100.0)	(3.3)	(14.4)	(36.7)	(28.9)	(16.7)



□ 고령화 사회에 대전시가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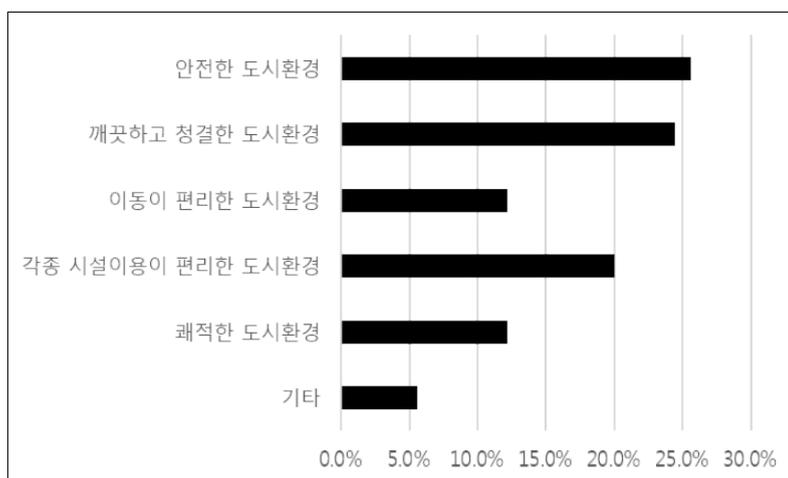
대전시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25.6%는 안전한 도시환경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각종 시설이용이 편리한 도시환경이라는 응답

은 전체의 20.0%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응답은 각각 전체 응답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고령자를 위한 대전시의 목표상 설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르신들께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위 : 명, (%))]

합계	안전한 도시환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이동이 편리한 도시환경	각종 시설이용이 편리한 도시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기타
90	23	22	11	18	11	5
(100.0)	(25.6)	(24.4)	(12.2)	(20.0)	(1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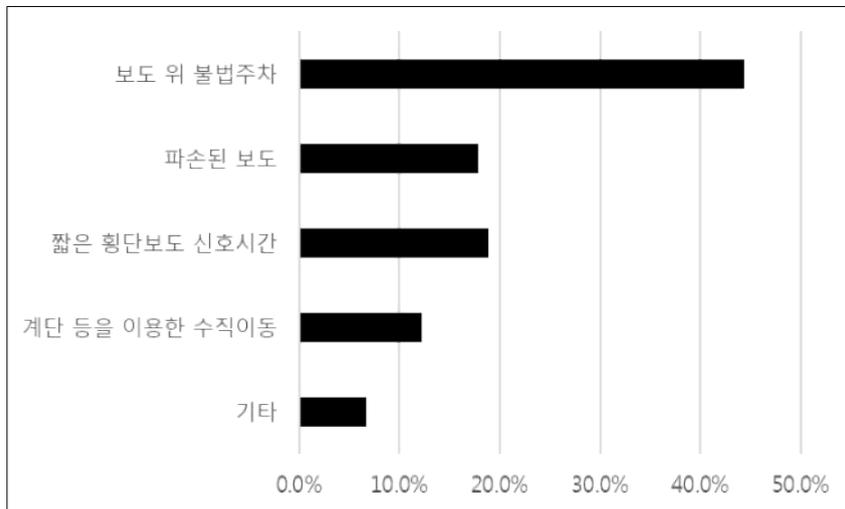
□ 보행 중 불편한 사항

대전시에서 걸어 다닐 때, 어떠한 점이 불편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도 위 불법주차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짧은 횡단보도 신호시간에 대한 불편은 18.9%이고, 파손된 보도에 대한 불편은 17.8% 그리고 계단 등 수직이동에 대한 불편은 12.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향후 고령자를 위한 대전시의 보행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중 대전시에서 걸어 다닐 때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단위 : 명, (%))]

합계	보도 위 불법주차	파손된 보도	짧은 횡단보도 신호시간	계단 등을 이용한 수직이동	기타
90	40	16	17	11	6
(100.0)	(44.4)	(17.8)	(18.9)	(12.2)	(6.7)



3.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배치 계획

□ 시설간 인접성

고령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총 9개 시설(집과 같은 주거시설,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공원 등 휴게시설, 마트 등 상업시설, 문화원 등 문화시설, 노인병원 등 의료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간 인접성, 즉 두 개 시설이 얼마나 가까우면 좋겠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집과 공원의 인접도가 5점 만점 척도에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집과 마트와의 인접도가 3.8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집과 버스정류장과의 인접도는 3.84점이다. 버스정류장과 마트와의 인접도는 3.7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과 동사무소간 인접도는 3.77점으로 다음 순위이다. 이처럼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과 이용시설이 인접하기를 바라고 있다.

집을 제외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과 마트가 인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3.78점), 다음은 버스정류장과 노인병원의 인접도가 3.76점으로 높다. 버스정류장과 공원과의 인접도는 3.7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어서²⁰⁾, 버스정류장에서 기타 관련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기를 바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교회와 문화원의 인접도는 2.86점으로 가장 낮으며, 교회와 노인병원간 인접도는 2.90점, 교회와 마트 및 교회와 버스정류장의 인접도는 2.9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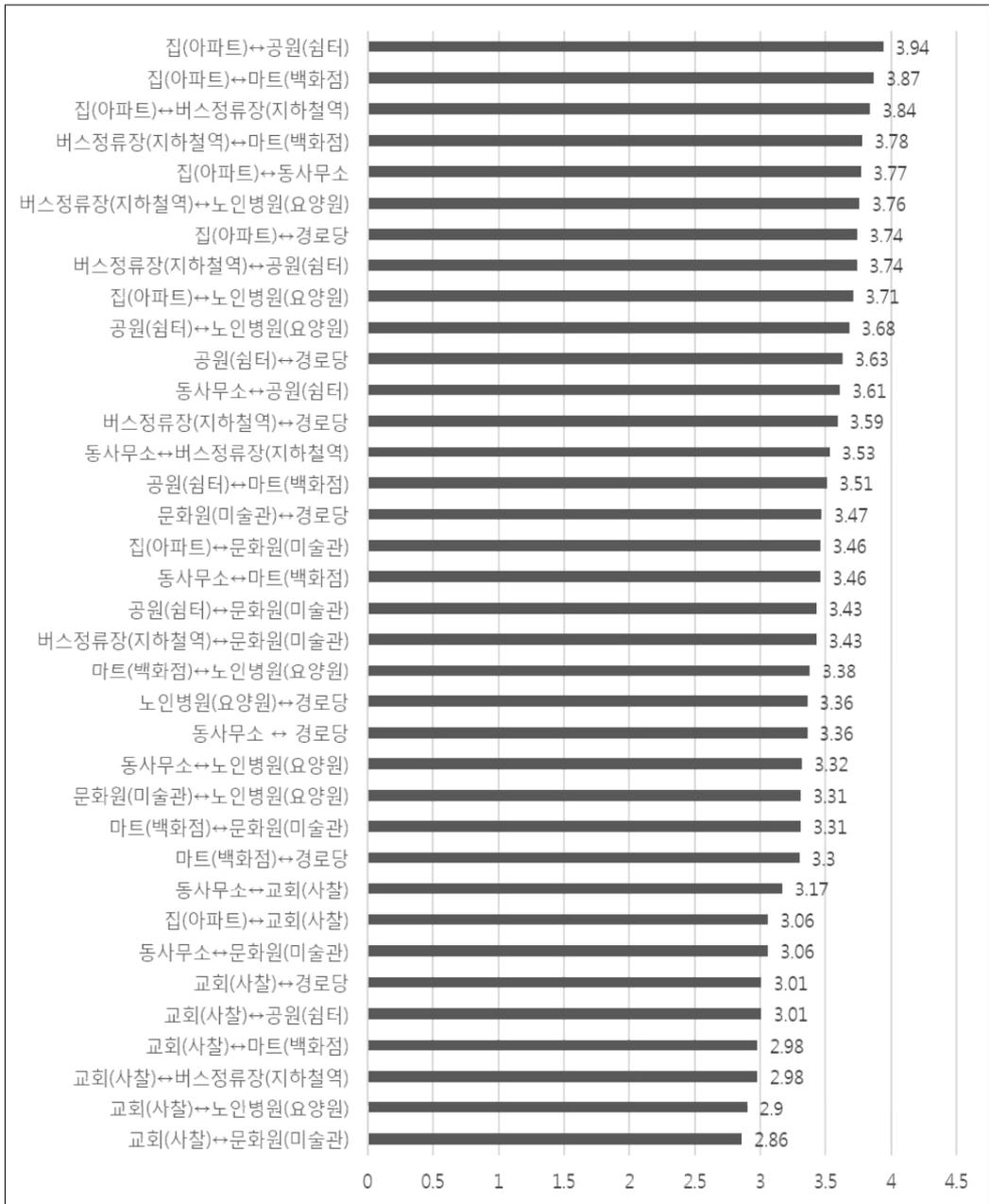
즉 집을 제외하면 버스정류장과 기타 고령자시설의 인접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회와 다른 시설간 인접성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건물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순위	구분	항 목	평균점수
1	Q4-4	집(아파트)↔공원(쉼터)	3.94
2	Q4-5	집(아파트)↔마트(백화점)	3.87

20) 제4장 3절에 제시된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고령자의 일상 교통수단은 도보(57.5%), 버스(3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Q4-3	집(아파트)↔버스정류장(지하철역)	3.84
4	Q4-23	버스정류장(지하철역)↔마트(백화점)	3.78
5	Q4-1	집(아파트)↔동사무소	3.77
6	Q4-25	버스정류장(지하철역)↔노인병원(요양원)	3.76
7	Q4-22	버스정류장(지하철역)↔공원(쉼터)	3.74
8	Q4-8	집(아파트)↔경로당	3.74
9	Q4-7	집(아파트)↔노인병원(요양원)	3.71
10	Q4-29	공원(쉼터)↔노인병원(요양원)	3.68
11	Q4-30	공원(쉼터)↔경로당	3.63
12	Q4-11	동사무소↔공원(쉼터)	3.61
13	Q4-26	버스정류장(지하철역)↔경로당	3.59
14	Q4-10	동사무소↔버스정류장(지하철역)	3.53
15	Q4-27	공원(쉼터)↔마트(백화점)	3.51
16	Q4-35	문화원(미술관)↔경로당	3.47
17	Q4-12	동사무소↔마트(백화점)	3.46
18	Q4-6	집(아파트)↔문화원(미술관)	3.46
19	Q4-24	버스정류장(지하철역)↔문화원(미술관)	3.43
20	Q4-28	공원(쉼터)↔문화원(미술관)	3.43
21	Q4-32	마트(백화점)↔노인병원(요양원)	3.38
22	Q4-15	동사무소 ↔ 경로당	3.36
23	Q4-36	노인병원(요양원)↔경로당	3.36
24	Q4-14	동사무소↔노인병원(요양원)	3.32
25	Q4-31	마트(백화점)↔문화원(미술관)	3.31
26	Q4-34	문화원(미술관)↔노인병원(요양원)	3.31
27	Q4-33	마트(백화점)↔경로당	3.30
28	Q4-9	동사무소↔교회(사찰)	3.17
29	Q4-13	동사무소↔문화원(미술관)	3.06
30	Q4-2	집(아파트)↔교회(사찰)	3.06
31	Q4-17	교회(사찰)↔공원(쉼터)	3.01
32	Q4-21	교회(사찰)↔경로당	3.01
33	Q4-16	교회(사찰)↔버스정류장(지하철역)	2.98
34	Q4-18	교회(사찰)↔마트(백화점)	2.98
35	Q4-20	교회(사찰)↔노인병원(요양원)	2.90
36	Q4-19	교회(사찰)↔문화원(미술관)	2.86



(그림 5- 2)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순위

□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시설간 인접 정도 분석

앞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을 개별적(시설별)으로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인접성 정도는 다차원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에 의해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응답자들의 평가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차원들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기법의 하나로, 대상들간의 유사성이나 선호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을 다차원 공간상에 거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²¹⁾

다차원척도법에 의해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간적 분포는 2차원(dimens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ess값은 0.18016으로 나타났고, 분석의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RSQ값은 0.87935로 높게 나타났다. Kruskal의 스트레스 값 기준을 보면, 스트레스값이 0.2 이상이면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0.1의 경우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결국 본 연구에서도 출된 결과는 적합도의 경우 보통의 값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설명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3)은 각 고령자시설별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주거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은 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의료시설 간에도 어느 정도 인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의 경우 앞선 시설군(주거시설, 휴게시설, 교통시설) 그리고 공공시설과 인접성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문화시설은 복지시설과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가장 독립적인 시설입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고령자 관련시설들을 상호 어떻게 인접시킬 것인지,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21) 이학식 외, 2007, p.444

22) 이학식 외, 2007, p.456

Iteration history for the 2 dimensional solution (in squared distances)

Young's S-stress formula 1 is used.

Iteration	S-stress	Improvement
1	.21405	
2	.17663	.03742
3	.17419	.00244
4	.17410	.00009

Iterations stopped because
S-stress improvement is less than .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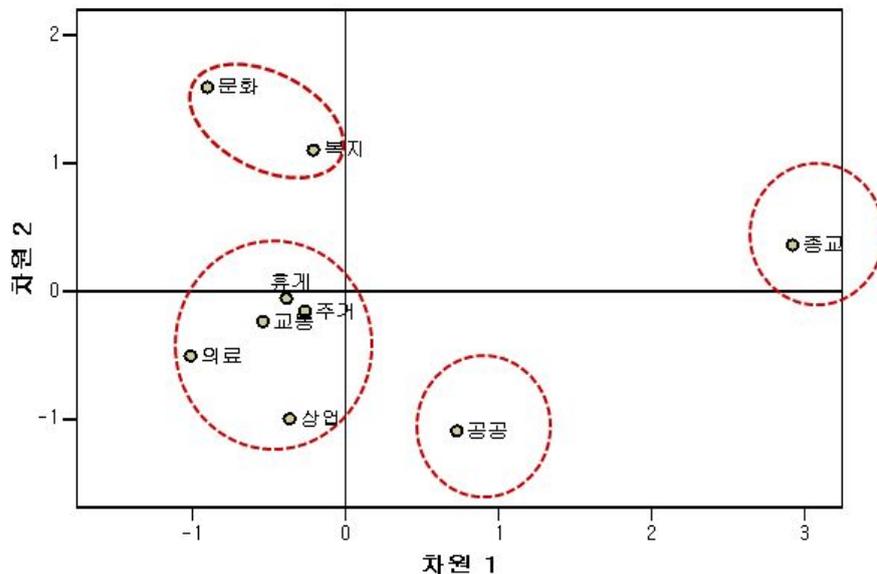
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 (RSQ) in distances

RSQ values are the proportion of variance of the scaled data (disparities) in the partition (row, matrix, or entire data) which is accounted for by their corresponding distances. Stress values are Kruskal's stress formula 1.

For matrix

Stress = .18016 RSQ = .87935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그림 5- 3)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 분석 결과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 도시의 일반적인 대응은 주로 복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도시전반에 걸쳐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도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였으며, 또한 연구의 방법론과 전개형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대전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장 및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제2장 「고령자의 정의 및 일반적 특성」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연령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고령자 및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차적 대상인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기관 및 운동기관이 쇠퇴한 상태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좌절과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제3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대응」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관련제도로서 법제와 주요 계획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관련연구 및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은 1980년 3.87%에서 1990년 4.98%, 2000년 7.33% 그리고 2010년 11.30%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시·도별로 보면, 2010년 기준 전라남도의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고, 권역적으로는 비수도권에서의 고령화가 수도권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 관련 법규로는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이 있으며, 고령자 관련한 국가차원의 계획으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연구로는 서울시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 대전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WHO의 고령친화도시, EU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통합 정책 등이 있다.

제4장 「대전시의 고령화 및 과제」에서는 대전시 고령화 추세 및 대응정책과 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령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전시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2.64%에서 1990년 4.02%, 2000년 5.48%, 2010년 8.79% 그리고 2013년의 경우 9.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동남부 지역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서북부 지역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노인과 관련하여 6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나,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는 미흡한 상태이다. 대전시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대전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과’를 두고 있으며, 대전시 내 고령자 관련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이 있다.

‘2013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대상 중 고령자 720명을 추출하여 고령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 고령자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약 60%), 일상의 교

통수단은 도보(57.5%)이며,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으며(78.3%), 본인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71.1%로 높고,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집(56.1%)이다. 한편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상교통수단, 노인 어려움 점, 주변 도움여부, 대화상대 여부, 본인 소득수준 만족도, 본인 소비수준 만족도 그리고 경제·사회적 위치 등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전시 고령화의 과제를 ① 고령화에 대한 대전시 대응방안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② 법제도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③ 계획적 대응을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이 요구되며, ④ 실증적 조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고령화 시대 도시관리 방안으로 계획적 대응, 법제도적 정비, 시설 배치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계획적 대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전도시기본계획 내 도시의 주요 과제(핵심이슈)로 고령화를 다루어야 하며, 부문별로 고령화 대응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고령자나 취약자를 위한 고령자지구 또는 취약자지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고령화(취약자)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 정비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 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대전시도 이러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상의 조례에 기초한 가칭 「대전시 고령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자 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차원에서 대전시 중구 서대전공원을 방문하는 고령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는 대전시 고령자 생활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편안하다(45.6%)고 응답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전시가 해야 할 일로는 안전한 도시환경(25.6%)으로 응답하였다. 보행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9개 고령자 시설간 인접성을 분석한 결과, 집과 공원의 인접도가 5점 만점 척도에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와 문화원의 인접도는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차원척도법(MDS)에 의해 9개 고령자 관련시설간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Stress값)는 보통(0.18016)이며 설명력(RSQ값)은 0.87935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거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은 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복지시설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가장 독립적인 시설입지를 나타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화 시대 대전시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분석 및 결과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가칭)’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기존의 조례와 달리 복지측면 뿐만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대전시 고령친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앞서 제시한 조례에 기반하여 ‘대전시 고령화(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대전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로 고령화를 설정하고 목표체계 구상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구현 차원에서는 고령자지구나 위약자지구 등의 지정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시민 및 전문가들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제정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고령인구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고령자(노약자)를 위한 도시계획 지침』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문헌자료

- 김경혜 등, 2010,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선자·김경혜, 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유중·채병선, 2003,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일상영역의 정비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김태일, 2009,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환경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주택계획에서 도시계획
으로의 접근,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5권 4호
대전광역시, 2012,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대전광역시, 201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민현석, 2012,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201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노인 100만 시대, 100세 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01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계획
서울특별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윤주현 외, 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
구원
이학식·임지훈, 2007, SPSS 12.0 매뉴얼 ;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임병호, 2007,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채준섭, 2008, 노인주거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인터넷 및 기타자료

- 대전시청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대전시 자료,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매일경제, 2014년 8월 8일 입력 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77554>)
뉴스충청인, 2014년 10월 20일 기사(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94744)

부록

부록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부록 2. 대전시 고령자 시설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지

부록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시행 2012.1.1.] [서울특별시조례 제5208호, 2011.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건강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 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기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인 투자기관과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이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① 시장은 노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읍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노인복지 읍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노인의 날 행사)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제23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복지건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29)
-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5208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 을 “복지건강실장” 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4. 제가 말씀드릴 **두 개의 건물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시설은 다음과 같이 **총 9개**입니다.)

- ① 집(아파트) ② 동사무소 ③ 교회(사찰) ④ 버스정류장(지하철역) ⑤ 공원(쉼터)
 ⑥ 마트(백화점) ⑦ 문화원(미술관) ⑧ 노인병원(요양원) ⑨ 경로당

문항	항	목	매우 가까이 있어야 한다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다	보통이다	멀리 떨어져도 상관없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1	집(아파트) ↔ 동사무소		5	4	3	2	1
2	집(아파트) ↔ 교회(사찰)		5	4	3	2	1
3	집(아파트) ↔ 버스정류장(지하철역)		5	4	3	2	1
4	집(아파트) ↔ 공원(쉼터)		5	4	3	2	1
5	집(아파트) ↔ 마트(백화점)		5	4	3	2	1
6	집(아파트)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7	집(아파트)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8	집(아파트) ↔ 경로당		5	4	3	2	1
9	동사무소 ↔ 교회(사찰)		5	4	3	2	1
10	동사무소 ↔ 버스정류장(지하철역)		5	4	3	2	1
11	동사무소 ↔ 공원(쉼터)		5	4	3	2	1
12	동사무소 ↔ 마트(백화점)		5	4	3	2	1
13	동사무소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14	동사무소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15	동사무소 ↔ 경로당		5	4	3	2	1
16	교회(사찰) ↔ 버스정류장(지하철역)		5	4	3	2	1
17	교회(사찰) ↔ 공원(쉼터)		5	4	3	2	1
18	교회(사찰) ↔ 마트(백화점)		5	4	3	2	1
19	교회(사찰)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20	교회(사찰)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21	교회(사찰) ↔ 경로당		5	4	3	2	1
22	버스정류장(지하철역) ↔ 공원(쉼터)		5	4	3	2	1
23	버스정류장(지하철역) ↔ 마트(백화점)		5	4	3	2	1
24	버스정류장(지하철역)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25	버스정류장(지하철역)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26	버스정류장(지하철역) ↔ 경로당		5	4	3	2	1
27	공원(쉼터) ↔ 마트(백화점)		5	4	3	2	1
28	공원(쉼터)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29	공원(쉼터)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30	공원(쉼터) ↔ 경로당		5	4	3	2	1
31	마트(백화점) ↔ 문화원(미술관)		5	4	3	2	1
32	마트(백화점)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33	마트(백화점) ↔ 경로당		5	4	3	2	1
34	문화원(미술관) ↔ 노인병원(요양원)		5	4	3	2	1
35	문화원(미술관) ↔ 경로당		5	4	3	2	1
36	노인병원(요양원) ↔ 경로당		5	4	3	2	1

1. 어르신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 학 ② 초등(국민)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이상

2.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하시면 어디?)

3. 어르신은 **누구와 사십니까?** (단,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선택해주세요.)

- ① 혼자 ② 부부 ③ 혼자+기혼(미혼)자녀 ④ 부부+기혼(미혼)자녀 ⑤ 기타

4. 어르신 또는 배우자께서는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 ① 할 수 있다.(=> 어르신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보유 : ○, ×) ② 할 수 없다.

5. 어르신의 **한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70만원 미만 ② 70만원~99만원 ③ 100만원~179만원 ④ 180만원~259만원 ⑤ 260만원 이상

감 사 합 니 다.

기본연구보고서 2014-14

고령화 사회와 대전시 도시계획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번지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